

친족성폭력에 맞서
'광장'을 여는

액션 워크숍



가족 ▽ 학대

성폭력의 '현장'



언제

1장 6/10(목), 2장 7/1(목) 19:30

어디서

한국성폭력상담소 유튜브

청주 아파트 여중생 2명 추락사...성범죄·아동학대 피해자 5/13 서울신문

'극단 선택' 여중생 2명 추모제 22일 청주 성안길서 열려 5/20 연합뉴스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교육청·사법기관 공조 체계 구축해야" 5/17 한겨레

1장

가부장제와 정상가족주의가 만든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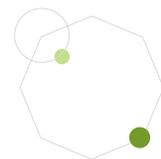
발표

6. 10. (목)
19:30

- 1. '가정폭력'
김홍미리(서울시여성가족재단)
- 2. '아동학대'
김희진(국제아동인권센터,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 3. '친족성폭력'
조은희(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유튜브
생중계

질의응답과 토론





2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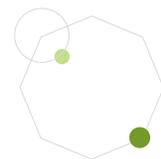
권리를 요구하는 주체로서 연대의 '광장' 만들기

7. 1. (목)
19:30

유튜브
생중계

발표

1. '사회운동 만들어가기, 연대하기'
미류(인권운동 사랑방)
2. '언론대하기, 언론되기'
김언경(민주언론시민연합)
3.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액션 공폐단단 소개
질의응답과 토론



친족성폭력에 맞서 '광장'을 여는 액션워크숍 자료 목차

1 강 가 부 장 제 와 정 상 가 족 주 의 가 만 든 ' 현 장 '

1. 친족성폭력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조은희] / 5
2. 아동학대 [국제아동인권센터 김희진] / 21
3. 가정폭력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성평등정책연구팀 김홍미리] / 60

2 강 권 리 를 요 구 하 는 주 체 로 서 연 대 의 ' 광 장 ' 만 들 기

1. '광장행 버스를 타겠다'사회운동 만들어가기, 연대하기 [인권운동사랑방 미류] / 76
2. 언론대하기, 언론되기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김언경] / 90
3. "그것을 알린다" 공폐단단 광장으로 향하는 공폐단단 활동의 질문과 답 [공폐단단 푸른나비] / 119
4. 공폐단단 친족성폭력 인식개선을 위한 연대활동 참여자로서의 고민과 탐구 [공폐단단 명아] / 129



친족 성폭력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조은희

목차

1. 들어가며
2. 친족 성폭력의 개념 및 법적 처벌
3. 친족 성폭력 피해의 실태
4. 친족 성폭력 피해의 특성
5. 열림터 통계로 본 친족 성폭력
6. 친족 성폭력과 가족
7. 친족 성폭력 피해생존자를 위한 지원의 확대

1. 들어가며

- 1953: 형법 제 32장 '정조에 관한 죄' → 강간과 추행의 죄(1995년 개정)
부녀를 → 사람을(2012년 개정)
- 1993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 성폭력범죄의 친고죄만 고소기간 1년(다른 범죄의 친고죄 고소기간 6개월)
- 1998년 형사소송법 224조 고소의 제한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가 있음에도 성폭력처벌법 제18조에 따라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는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음.
- 2013년 6월19일 성폭력 비친고죄
- 공소시효 폐지: 미성년자 성인도달 후 공소시효 적용, 과학적 증거 있을 시 공소시효 10년 연장, 13세미만 미성년 여자. 장애인 강간, 준강간 공소시효 폐지 (2011.11.17) 여자 → 사람 (2013) 13세 미만, 장애인 성폭력,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 추행 등 (2019.8.20), 형법 305조 포함(2020.5.19)

2. 친족 성폭력의 개념 및 법적 처벌

1) 개념 (성폭력처벌법 제5조)

- ① 친족의 범위: 4촌 이내의 혈족.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 포함
- ② 법적개념: 4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및 동거하는 친족인 자가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을 행하는 것
- ③ 법적 처벌: 친족에 의한 강간(7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족에 의한 강제추행(5년 이상의 유기징역)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강간: 7년 이상의 유기징역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폭력처벌법 제 7조)

3. 친족 성폭력의 실태

(한국성폭력상담소 2019년 세부상담통계)

표1. 연도별 가해자와의 관계

단위:건(%)

계	유형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미상	총계	
		친족, 친/인척		직장	친밀한 관계	인터넷	동네 사람	서비스 제공자	학교	유치원 /학원	주변인의 지인	소개로 만난 사람				기타
		친족	친/인척													
2017년		113 (9.0)	30 (2.4)	375 (29.8)	116 (9.2)	40 (3.2)	60 (4.8)	66 (5.2)	121 (9.6)	40 (3.2)	73 (5.8)	19 (1.5)	45 (3.6)	103 (8.2)	59 (4.7)	1,260 (100.0)
2018년		64 (5.4)	66 (5.6)	353 (29.7)	86 (7.2)	41 (3.4)	65 (5.5)	60 (5.0)	136 (11.4)	39 (3.3)	66 (5.6)	13 (1.1)	40 (3.4)	73 (6.1)	87 (7.3)	1,189 (100.0)
2019년		78 (8.6)	9 (1.0)	276 (30.3)	94 (10.3)	24 (2.6)	92 (10.1)	41 (4.5)	87 (9.5)	33 (3.6)	28 (3.1)	31 (3.4)	6 (0.7)	43 (4.7)	70 (7.7)	912 (100.0)
2020년		59 (8.3)	43 (6.0)	215 (30.1)	86 (12.0)	32 (4.5)	44 (6.2)	33 (4.6)	50 (7.0)	20 (2.8)	33 (4.6)	15 (2.1)	7 (1.0)	40 (5.6)	38 (5.3)	715 (100.0)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상담한 친족 성폭력 상담은 2017년 11.4%, 2018년 11%, 2019년 9.6%로 매년 10% 전
후였으나 2020년엔 14% 많이 증가하였다.

3. 친족 성폭력의 실태

(한국성폭력상담소 2019년 세부상담통계)

표 2. 친족 성폭력 피해 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단위:건(%)

연령 \ 관계	친부	의부	형제	2촌이내 친족	4촌이내 친족	시부	그 외 친족	합계
성인 (20세 이상)	-	1 (1.2)	1 (1.2)	3 (3.4)	5 (5.7)	2 (2.3)	5 (5.7)	17 (19.5)
청소년 (19세-14세)	3 (3.5)	3 (3.4)	4 (4.6)	-	5 (5.7)	-	3 (3.5)	18 (20.7)
어린이 (13세-8세)	10 (11.4)	-	8 (9.2)	1 (1.2)	9 (10.3)	-	1 (1.2)	29 (33.3)
유아 (7세 이하)	5 (5.8)	-	4 (4.6)	-	7 (8.0)	-	-	16 (18.4)
미상	2 (2.3)	-	1 (1.1)	1 (1.1)	3 (3.5)	-	-	7 (8.0)
합계	20 (23)	4 (4.6)	18 (20.7)	5 (5.7)	29 (33.3)	2 (2.3)	9 (10.3)	87 (100)

친족성폭력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있는 연령대는 어린이 시기로 33.3%이다. 13세 미만 어린이 시기는 공소시효가 폐지 되었지만 성인기와 청소년기 40.2%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어¹⁰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3. 친족 성폭력의 실태

(한국성폭력상담소 2019년 세부상담통계자료)

표3. 피해 이후 상담까지의 경과기간

단위:건(%)

기간 건수	1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미상
87 (100)	21 (24.1)	4 (4.6)	12 (13.8)	<u>48</u> <u>(55.2)</u>	2 (2.3)

친족 성폭력 피해를 상담하기 까지 경과된 시간은 10년 이상이 55.2%
2018년 상담통계 중 #미투 세부통계 분석에서 10년 이상 경과한 상담 41.1%
스쿨 미투 세부통계 분석 2.7%

친족 성폭력이 상담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알 수 있음.

3. 친족 성폭력의 실태

(한국성폭력상담소 2019년 세부상담통계)

표 4 친족 성폭력 상담 의뢰인별 상담 현황

단위:건(%)

관계		본인	대리인					
			가족	데이트상 대	이웃친구	학교	유관기관	기타
2019년 전체상담	912건	562 (61.1)	155 (17.0)	37 (3.0)	45 (4.9)	25 (2.9)	29 (3.1)	40 (4.4)
2019년 친족 성폭력 상담	87건	41 (47.1)	<u>35</u> (40.2)	4 (4.6)	1 (1.2)	2 (2.3)	2 (2.3)	2 (2.3)

2019년 전체상담통계에서 본인 상담은 61.6%, 친족성폭력에서 본인 상담은 47.1%
 전체상담통계에서 가족 대리인 상담은 17%, 친족성폭력의 가족대리인 상담은 40.2%월등히 높음

3. 친족 성폭력의 실태

(한국성폭력상담소 2019년 세부상담통계)

표 5 상담 전 대응방법

< 단위: 건(%)>

대응방법 건수	법적대응	기관	주변인 도움	사과 요구	대응 못함
87 (100.0)	17 (19.5)	4 (4.6)	<u>43</u> <u>(49.4)</u>	9 (10.4)	14 (16.1)

표 6 친족 성폭력 본인 상담 중 피해자 주변인의 태도

< 단위:건(%)>

태도 건수	지지받지 못함	대응 못함	미상
41 (100.0)	22 (53.7)	17 (41.5)	2 (4.9)

표5에서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이 상담 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건은 전체 87건 중 43건(49.4%)에 해당
표6에서 본인 상담 시 피해자에 대한 주변인의 태도는 53.7%가 지지 받지 못하고 41.5% 대응 못함으로 나타나 대부분 주변인들로 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였음.

주변인들의 지지와 대처가 피해자들의 치유회복과 일상복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3. 친족 성폭력의 실태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자료)

표 7 친족 성폭력 대리인 상담 중 대리인의 피해자에 대한 태도 <단위: 건(%)>

태도 \ 건수	지지	방관	과잉보호	양가감정
46 (100.0)	36 (78.3)	3 (6.5)	3 (6.5)	4 (8.7)

대리인 상담 46건 중 피해자를 지지한다는 상담이 36명 78.3% 그 외 양가감정 4명 8.7% 방관과 과잉보호가 3명 6.5%로 나타나 78.3%의 내담자가 피해자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6의 피해자 상담시와는 상반되게 나타남.

이유:

피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주로 전화
가해자 지지 내담자는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 시 가해자 상담으로 분류
성폭력피해자 상담기관이라는 특수성

4. 친족 성폭력 피해의 특성

- 1) 가부장적 가족구조 안에서 발생한다.
- 2) 피해를 인지하기 어렵다.
- 3)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다.
- 4) 자책감과 수치심을 느낀다.
- 5) 중복 피해에 노출된다.
- 6) 가족에 의한 2차 피해의 위험이 크다.
- 7) 주변의 자원이나 지지자의 부재

5. 열림터 통계로 본 친족 성폭력

표8 열림터 생활인의 가해자와의 관계(1994~2018)

총인원 (310.100%)	친족(232. 74.8%)		지인(61. 19.7%)				모르는 사람 (7. 2.3%)	미상 (10. 3.2%)
	친.의부	친인척	모의 동거남	데이트	직장	기타		
19세 미만 (228.73.5)	142 (45.8)	42 (13.5)	6 (1.9)	5 (0.3)	1 (0.3)	27 (8.7)	3 (10.0)	2 (0.6)
19세 이상 (82. 26.5)	37 (11.9)	11 (3.5)	1 (0.3)	8 (2.6)	4 (1.3)	9 (2.9)	4 (1.3)	8 (2.6)
총계	179 (57.7)	53 (17.1)	7 (2.3)	13 (4.2)	5 (1.6)	36 (11.6)	7 (2.3)	10 (3.2)

5. 열림터 통계로 본 친족 성폭력

1) 1994~2018년까지 열림터 입소자는 411명, 재 입소 69명, 가족 동반자 32명

시대적인 영향이 큼(열림터 개소 초기 시기에는 피해자가 피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가정밖으로 나와야 하고 함께 대응하는 모(母)도 경제적인 독립이 어렵고 사회적 통념 및 인식 등으로 인해 쉼터에 입소할 수 밖에 없음.)

2)피해자 입소는 310명, 친족성폭력은 232명 74.8%이며, 19세 미만 피해자가 73.5%으로 표 2. 2019년 친족 성폭력 상담통계 19세 미만과 비슷함.

3) 열림터 입소자 중 친부. 의부에 의한 피해자는 232명 중 179명 57.7%로 표 2의 친족성폭력 상담통계의 친부.의부 피해 27.6%와는 차이가 많음. (친족 성폭력 중 친부나 의부 등 가부장에 의한 피해일 경우 원 가정에서 살 수 없어 쉼터로 입소할 수 밖에 없음.)

6. 친족 성폭력과 가족

친족성폭력 ⇄ 가족

1. 친족성폭력은 아동기에 집중되어 있어 아동학대 등 아동의 생존권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문제
2. 청소년기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은 가출 등 또다른 피해에 노출
3. 가족이 지지자가 아니거나 가족에 의한 2차 피해
4.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에게 가족 부재에 대한 정신적인 공허함을 채우는 것은 평생일대의 과업

***** 대법원 형사3부 2020도 6965 판결

- 피해자인 딸이 재판과정에서 아버지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가족들의 회유에 따른 처벌불원서는 진심으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7. 친족 성폭력 피해생존자를 위한 지원의 확대

1) 주거 지원 및 주거 지원시설의 확대: 퇴소 후 안정적인 자립여건 조성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2)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자립지원

-기초학습 부진- 학업 완성도 낮음 - 열악한 경제현실 - 심리. 정서적 불안- 치유회복의 문제

- 다양한 취업기회 부여 등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에 적극적 대안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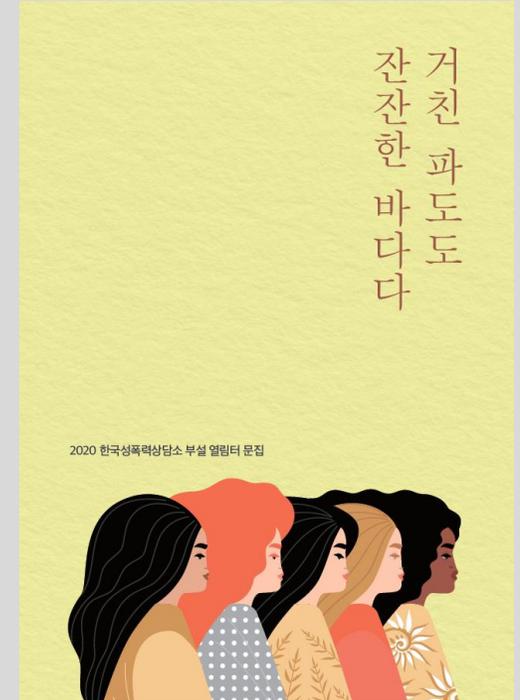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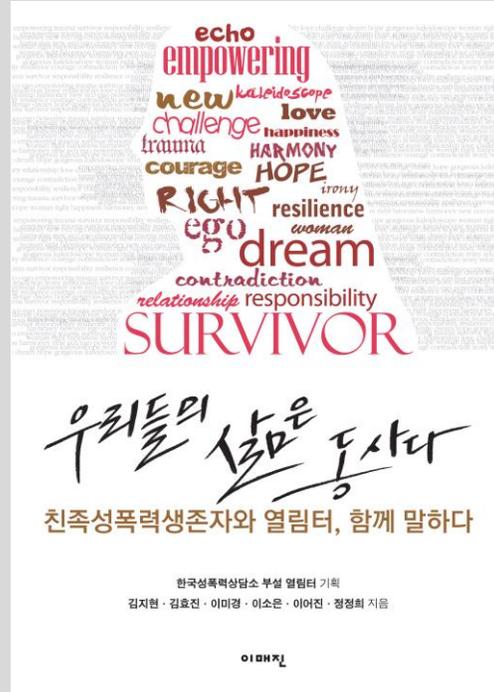
3) 장기적인 의료지원 및 심리.정서지원의 필요.

한정적인 의료지원(1인당 500만원)

사건종결 후나 쉼터 퇴소 후 더욱 필요한 의료지원, 심리정서 지원

장기적이고 다원화된 지원체계가 필요함 (자조모임 등)

추천의 책



감사합니다.

아동학대, 가부장제와 정상가족주의가 만든 '현장'

국제아동인권센터 김희진

2021.06.10.
온라인

21

국제아동인권센터

International Child Rights Center

국제아동인권센터는 모든 아동이
그들의 권리, 존엄성, 진실성이 존중 받는 환경 속에서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여
보다 나은 세상에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기관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인류 보편적 가치를 따르고 글로벌 경험과 지식을 알리며
인권문화 형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전 세계 196개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으로 경제, 사회, 문화, 시민, 정치적
권리와 모든 아동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 한 사회가 아이들을 다루는 방식보다 더
그 사회의 영혼을 정확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은 없다.

넬슨 만델라 (1918-2013) ”

친권의 법적 해석

- 아동권리를 중심으로 -

01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909조(친권자)

- ①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 ②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제914조(거소지정권)

자는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제916조(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

제920조(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 그러나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으로 어떻게 친륜을 가르려 하는가?”

(출처: 2009. 3. 1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최진실법’에 대한 의문, 그 진실은?)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①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919조 (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021. 1. 26. 민법 제919조 삭제.

[개정이유]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은 아동학대 가해자인 친권자의 항변사유로 이용되는 등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는바, 징계권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이를 방지하고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친권의 법적 해석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아동 학대 행위는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피해 아동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악영향을 미친다.

우리 사회는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예방·방지하거나, 이미 발생한 범행을 처벌하기 위하여 입법적 결단을 거쳐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두고 있다. 제도나 규정 등이 아무리 정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정하게 운용하는 것은 온전히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몫이다.

그런데 **부모를 포함한 아동에 대한 보호자는 그 아동에 대하여 가지는 '친권'을 아동에 대한 양육과 보호의무 등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아니하고**, 아동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권능을 부여받은 것으로 잘못 생각한 채 그에 따라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로 인하여 아동에 대한 중대한 학대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우리 사회는 피해 아동이 스스로 세탁실 창문을 넘어 배관을 타고 탈출하기까지 피해 아동에게 아무런 도움이나 관심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다. 그러한 점에 대하여 **우리는 뼈아픈 반성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인천지방법원 2016. 2. 19. 선고 2016고합15 판결

보호자의 권리?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인생관·사회관·교육관에 따라 자녀의 양육을 자유롭게 형성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은 제36조 제1항에서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장함으로써 가족의 자율영역이 국가의 간섭에 의하여 획일화·평준화되고 이념화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는데, **가족생활을 구성하는 핵심적 내용 중의 하나가 바로 자녀의 양육**이다.

[헌재 2000. 4. 27. 98헌가16, 98헌마429(병합)]

양육권은 공권력으로부터 자녀의 양육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라는 점에서는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국가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군인을 제한하는 것은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양육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헌재 2008. 10. 30. 2005헌마1156]

보호자의 권리?

아동권리협약 전문 (Preamble)

가정은 사회의 기본적인 집단이며 모든 구성원, 특히 **아동의 발달과 안녕(well-being)을 위한** 본질적인 환경으로서, **공동체 안에서 본연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함을 확신하며,

온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아동은 가정 환경과 행복, 사랑과 이해 속에서 성장해야 함을 인정하고,

아동은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충분히 준비되어야 하며, 유엔헌장이 선언한 **평화·존엄·관용·자유·평등·연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받아야 함을 고려하며,

보호자의 권리?

아동권리협약 제18조

① 당사국은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있어 부모 공동 책임의 원칙이 인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 법정대리인은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을 지며, 아동 최상의 이익에 기본적 관심을 두어야 한다.**

② 본 협약에 규정된 권리의 보장과 증진을 위해, **당사국은 부모 및 법정대리인이 아동에 대한 양육 책임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아동 돌봄을 위한 기관, 시설 및 서비스 개발을 보장해야 한다.

③ 당사국은 부모가 모두 일하는 상황에서 아동이 아동돌봄시설 및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보장을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02

03

보호자의 권리?

아동권리협약 제19조

① **당사국은** 부모나 법정대리인, 기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방임 또는 방치하는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가혹한 처우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 및 아동 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과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다른 형태의 예방은 물론, 학대사례를 확인·보고·조회·조사·처리·추적하고 적절한 경우 사법적 개입이 가능한 효과적인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보호자의 권리?

아동권리협약 제19조

① **당사국은** 부모나 법정대리인, 기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방임 또는 방치하는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가혹한 처우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 및 아동 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과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다른 형태의 예방은 물론, 학대사례를 확인·보고·조회·조사·처리·추적하고 적절한 경우 사법적 개입이 가능한 효과적인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보호자의 권리?

5. “당사국”에 대한 언급은 국가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주/도, 시) 수준에서도 아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당사국의 의무에 관련된다. 이 특별한 의무는 **‘응분의 주의(due diligence)’ 의무**이자, **‘폭력 또는 인권침해를 방지할 의무, 인권침해로부터 아동 피해자/증인을 보호할 의무, 책임자를 조사하고 처벌할 의무, 인권침해를 시정할 의무’**에 해당한다. 폭력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당사국은 부모 및 아동을 보살피는 여타 사람’**이 자신의 능력과 경제적 여건 내에서, 그리고 아동의 변화하는 능력에 맞추어, 아동의 최적의 발달에 필요한 생활조건을 확보하는 것을 **‘지원하고 원조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무를 지고 있다’**(제18조 및 27조). 나아가 당사국은 자신의 업무상 폭력의 예방,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폭력에 대한 대응에 책임을 지고 있거나 사법부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아동의 필요에 부응하고 또한 그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3호 (2011)

“

어떠한 아동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다.
모든 아동폭력은 예방 가능하다.

No violence against children is justifiable;
all violence against children is preventable.

- 아동폭력에 대한 유엔 독립전문가 보고서 (2006) -

”

Paulo Sérgio Pinheiro



아동학대 사례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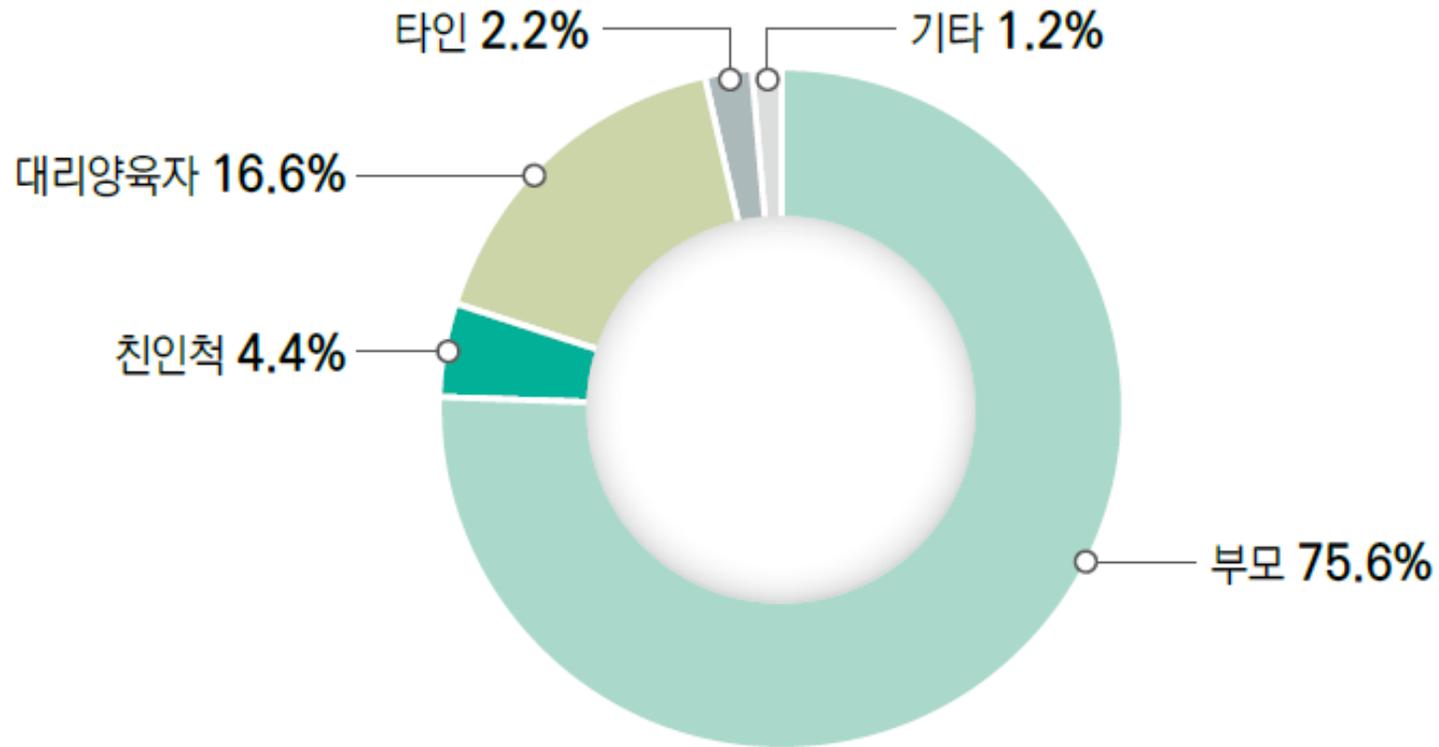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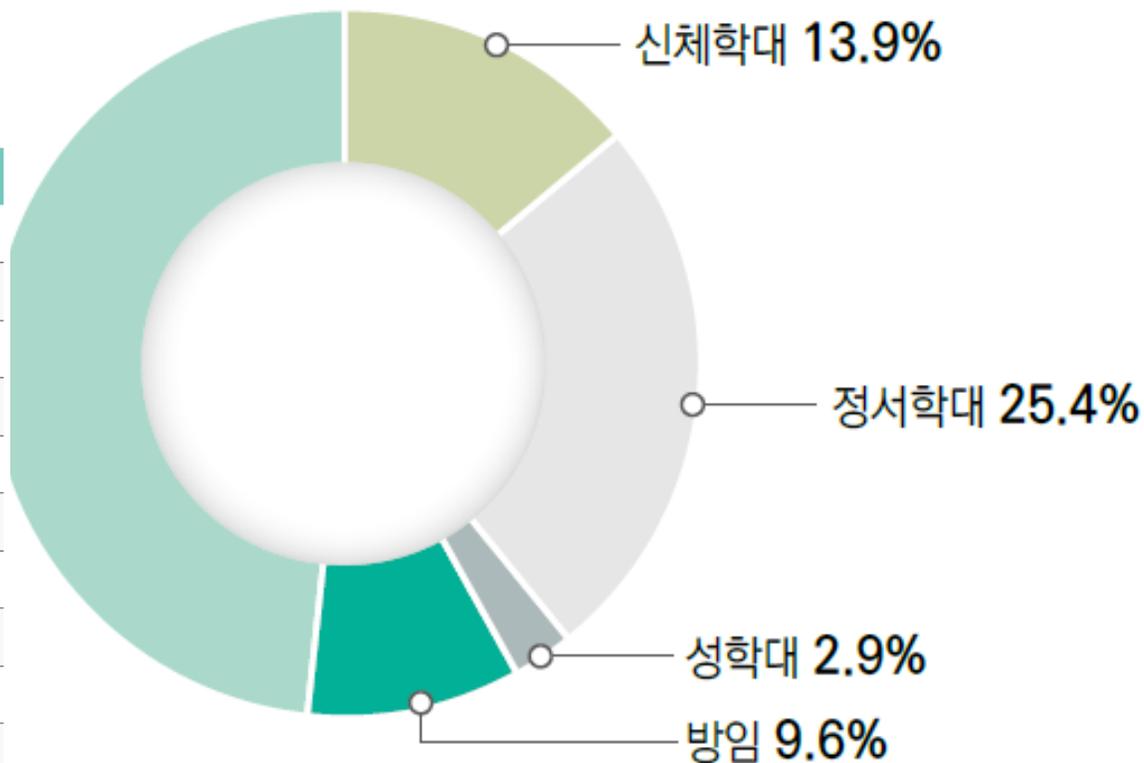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보건복지부 · 아동권리보장원. (2020).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

아동학대 유형

유형		건수(비율)	
신체학대		4,179	(13.9)
정서학대		7,622	(25.4)
성학대		883	(2.9)
방임		2,885	(9.6)
중복학대	신체학대·정서학대	11,611	(38.6)
	신체학대·성학대	40	(0.1)
	신체학대·방임	290	(1.0)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	218	(0.7)
	신체학대·정서학대·방임	909	(3.0)
	신체학대·성학대·방임	3	(0.0)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방임	198	(0.7)
	정서학대·성학대	174	(0.6)
	정서학대·방임	1,007	(3.4)
	정서학대·성학대·방임	11	(0.0)
	성학대·방임	15	(0.0)
	소계	14,476	(48.2)
	계	30,045	(100.0)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0).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 부부폭력을 목격한 자녀의 경우, 심리사회적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이연복, 2000; 조미숙, 1999; Sullivan, et al, 2002; DeVoe & Smith, 2002; Hart, et al, 2007)
- 부부폭력목격 경험은 특히 우울과 관련된 심리정서적 부적응을 나타낼 위험이 높다. (최장원, 김희진, 2011; 이경은, 장덕희, 2000)
- 부모폭력을 목격한 아동·청소년은 직접적인 학대를 경험한 아동·청소년보다 더 심한 우울 정도를 보였다. (Howells & Rosenbaum, 2008).
- 부부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일수록, 가족 구성원 중 감수성이 예민한 아동들에게 우울과 같은 심리사회적 부작용을 증대시키는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장원, 김희진, 2011; 김희수, 2005)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 피고인 甲은 피해 아동 A(여, B의 누나)와 B(남, 만 4세 3개월 남짓부터 만 6세 4개월에 이르는 시기)의 계모이며, 피고인 乙은 피해 아동들의 친부이다.
- 피고인 甲은 피해 아동들이 지켜보거나 듣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乙에게 피해 아동들을 양육하기 싫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표시하면서, 가재도구를 집어던지거나 가위로 피고인 乙의 다리를 찌르는 등 과격한 방식으로 2년간 지속적으로 부부싸움을 하였고, 피해 아동들에게 직접적으로 욕설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려는 확정적인 고의는 없었다 할지라도, 가재도구를 집어던지거나 피해자들의 신체나 물건에 유형력을 가하고 피해자들을 지칭하여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양육 문제로 격렬하게 부부싸움을 한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아동의 정신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로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2176 판결)

-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아내와 다투다 의붓 자녀들인 피해 아동 A(여, 17세)와 B(여, 14세)에게 “네 엄마가 걸레라는 것을 알아라”라고 말하고, 그 후에도 일주일에 1~2회 정도 술에 취해 귀가 하여 아내와 다투면서 피해 아동들에게 “저런 것이 인간이냐, 인간도 아닌 년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후에도 아내와 다투던 중 피해 아동들이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들에게 “인간 같지도 않은 년들, 내 집에서 나가라, 쓰레기 같은 년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 아동들이 듣는 상태에서 “내 자식들도 아니니까 잡아 가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피해 아동들이 사춘기에 있는 여자 청소년이며, 피고인이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친모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성적인 내용의 험담과 욕설을 한 점, 배우자와 다투고 난 다음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피해 아동들에게까지 욕설을 한 점, 아동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경찰까지 불러 피해 아동들이 친자식이 아니라면서 잡아가라고 말을 한 것은 아동들에게 모멸감과 수치심을 적지 않게 주었을 것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노1367 판결)

- 피고인은 피해 아동(여, 14세)의 친부로, 처가 집에 들어오지 않자 잠자던 피해 아동을 깨워 방으로 불러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하였으며, 피해 아동의 외가 식구들을 욕하였다. 또한, 피우던 담배를 피해 아동 옆으로 던지고 박카스 병으로 책상을 치면서 피해 아동을 겁주어, 피해 아동에게 '엄마가 잘못했다. 나쁘다. 아빠는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피해 아동의 모와 외조부 등에게 보내게 하였다. 피해 아동을 방으로 돌려보낸 후에는 안방에서 야한 동영상을 큰 소리로 틀어 피해 아동에게 들리게 하여 피해 아동이 잠을 자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정서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에 있는 친딸인 피해 아동에게 성적인 내용의 정서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 아동에게 겁을 주어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친모 등에 대하여 모욕적 행위를 하였다. 피해 아동에 대한 정서학대 외에도 처에 대한 폭력행위 등 사건의 내용과 가족관계 이력, 생활이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이며 특히 아동에 대한 정서적, 교육적 이해가 부족하므로 부모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대구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노4678 판결)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 피고인(친부)은 피해 아동 A(13세)와 B(6세)의 친모에게 수차례 폭행을 가하였으며, 피해 아동 A가 “엄마가 아빠에게 맞아 죽으면 어떻게 하나 ” 는 불안감이 들게 하였다.
-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학대 행위를 하여, 피해아동 A는 피고인에게 맞아 동생인 피해 아동 B와 자신이 죽는 꿈을 꿀 정도로 두렵게 했다.
- 피고인은 피해 아동 A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처에게 상해를 가하고 소중한 자신의 자녀들을 수차례 폭행하는 등 가정폭력을 일삼는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력으로 자신의 큰 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여 저지른 학대, 추행 범행은 그 죄책이 무겁고 죄질도 좋지 않다.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은 커다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부산고등법원 2018. 8. 9. 선고 2018노137 판결)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들의 고모와 동거하는 사실혼 배우자다.
- 피고인은,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이 노령의 조부모에게서 제대로 된 양육을 받지 못하자 훈육한다는 핑계로 나무 막대기와 쇠파지 자루 부분 등으로 머리와 발바닥을 수십 회 때렸다.
- 피고인은 주차된 차 안에서 피해 아동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아동의 가슴과 음부, 엉덩이 등을 만졌고, 피고인의 주거지와 들판 등에서 피해 아동을 간음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피해 아동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상당 기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태양 및 수법,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나쁘다. 피해 아동들은 오랫동안 피해 사실을 말하지 않았는데,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 조부모와 함께 살 수 없게 될까 봐 두려웠다고 한다. 위와 같은 진술을 고려하여, 피해 아동들이 피해 사실을 부풀려 과장된 진술을 하였거나 자신들의 기억에 반하는 거짓 또는 왜곡된 진술을 통해 피고인을 모함하였을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도7417)

- 피고인은 재혼가정의 계부이며, 피해 아동은 의붓딸(만 14세)이다.
- 피고인은 여러 번에 걸쳐 피해 아동을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의붓딸인 만 14세의 피해 아동을 건전하게 양육·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 아동을 여러 번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강간 행위까지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자신의 모(피고인의 처)의 재혼가정이 파탄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사실을 주변에 알리거나 피고인을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을 행했다. 경위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추행의 정도도 상당히 중한 점, 나이 어린 피해 아동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미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로 인한 성적 가치관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수원고등법원 2019. 8. 22. 선고 2019노110 판결)

아동권리,
'정상가족'의 경계를 넘어

03

성 학대, 대표적인 암수범죄

- 아동 당사자는 물론, 제3자가 인지하기 어려움
- 아동 진술의 증명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기타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움 (목격자의 부재, 랜덤채팅앱 등)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 특히 친족 내 성학대의 경우, 다른 가족구성원의 협조가 어려움
- 수사기관의 인식 수준이 제한적임
- 성에 대해 말하는 것을 금기시/터부시하는 사회 분위기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까?)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포용국가 아동정책 (2019. 5. 23.)

<1-3> 아동학대 대응체계 혁신 및 가족 회복 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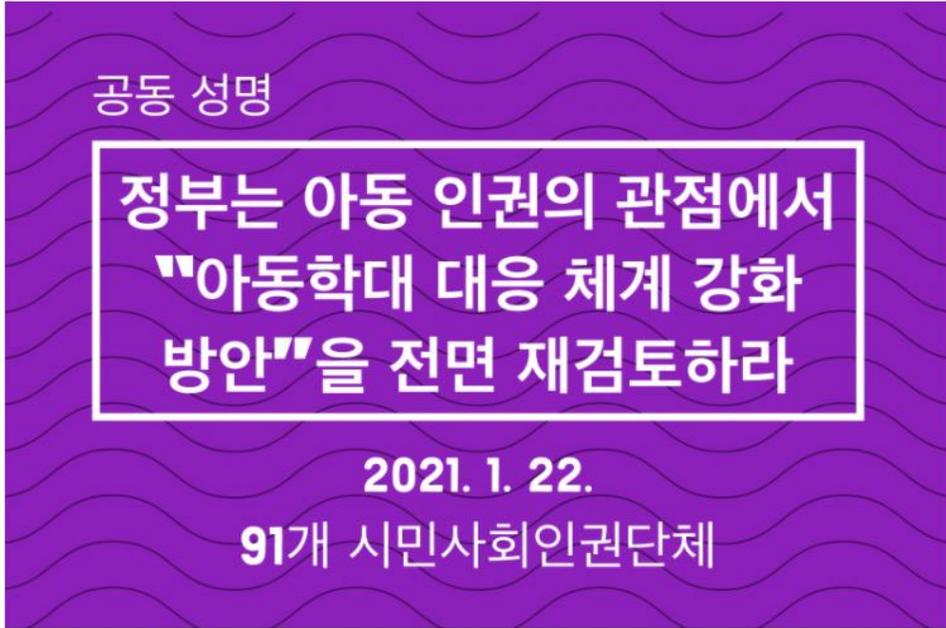
□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시군구 사회복지 공무원을 확충하고 민간수행* 학대조사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 경찰과 함께 직접 수행
 - *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민간인)이 아동분리, 현장조사 등 강제력 행사 업무 수행 → 조사거부·신변위협 등 한계(美·英·日 등 주요국은 공무원이 수행)
 - ※ 공공화 선도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전담 공무원 배치, '22년까지 전국 확산
- 시군구 공무원 초기 개입 및 직접 조사로 경찰·학교·의료기관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기반 마련
 - ☞ 지역사회 자원 활용하여 신속·원활한 대응 및 정보 공유 가능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긴급분리 후 재학대 위험 소멸 및 안전 확보 시까지 전문적 사례관리* 담당 기관으로 개편(1인당 사례관리 64건→82건)
 -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생활비·생필품 제공, 피해자 상담 심리치료, 양육기술·방법 등 부모 교육), 사례 종결 후 사후관리 등
- (사례분석 강화) 매년 사망사건(18. 31명)에 대해 발생원인, 대응과정, 조치결과 등을 전수 분석·평가하여 개선 사항 도출
 - 아동학대 사망사건 관련 국가기관 간 통계 불일치 해소 추진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 (2021. 01. 19.) - 16개월 아동학대 사망사건 중심으로 -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교육 기간 확대 (2주 → 4주)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지원 강화
- 아동권리보장원 사례전문위원회 구성
- 담당업무를 전문직위로 지정(최소 3년 이상 근무)
- 학대예방경찰관(APO) 심리학, 사회복지학 등 학위 취득 지원
- 경찰, 지자체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구체적인 역할 정립 및 협업 강화
- 112 경찰신고 일원화
- 경찰, 공무원 상호동행출동 원칙
- 시군구 통합사례회의 개최
- 아동보호전담요원 단계적 배치
- 즉각분리제도 법제화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https://blog.naver.com/childrights/222216163809>

양천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구제를 위한 아동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다.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교육훈련 과정을 구성하고, 내외부 모니터링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없이 단순히 전담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과 보수교육 시간을 늘리고 순환보직을 금지하는 대책으로 전문성 강화를 위하는 것은 현장의 부담만을 가중시킬 뿐이다.

즉각분리 제도 또한 충분한 대책이 아니다. 사안의 긴급성과 위급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담당자의 전문성과 아동인권 감수성이 필수적이다. 분리된 이후에 필요한 아동과 가정에 대한 지원과 개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진상조사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 성명 +

+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한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두루, 세이브더칠드런, 정치하는엄마들, 탁틴내일, 아동인권을 옹호하는 연구자 모임, 한국미혼모지원 네트워크, 한국아동복지학회, 뿌리의 집

<https://blog.naver.com/childrights/222236934258>

아동의 생명과 인권을 지켜내겠다는 국회의 획기적 결단이 본 진상조사 특별법 제정에 담겨있다고 믿는다.

매번 정부와 국회는 앞다투어 대책을 내놓았지만 사건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고, 어디를 고쳐야 하는지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다. 졸속대책은 정작 해당 사건에 대한 해법조차 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무엇이 문제인지 사건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없다.

충분한 예산과 인력, 활동기간을 보장하여 철저한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학대근절대책을 포함한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과 개선책이 나올 수 있도록 결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진상조사특별법 제정 촉구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786>

또 잃었다.....
청주 중학생 동반사망사건 진상조사하라!
국회는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즉각 처리하라!

지난 12일 청주 중학생 동반사망사건이 전해지며,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을 검찰이 세 차례나 기각한 점과 피해자/가해자 분리 및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두 친구가 아파트 옥상에서 삶을 포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간을 겪었겠는가? 그 마지막 순간에 대해 우리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더이상 미안하다는 말도 입 밖으로 꺼낼 염치가 없다.

국회는 '죽음에서 배울 의무'를 망각하지 마라!
국회는 '아동학대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2021년 5월 20일

국제아동인권센터,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정치하는엄마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이행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민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오픈넷, 세이프더칠드런 코리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월드비전,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핑동,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연대

- (a) 모든 아동에 대한 모든 폭력 및 학대 사건의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해당 사건의 규모, 원인, 특성에 대한 포괄적 평가를 실시할 것
- (b) 온라인 폭력을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를 방지, 근절, 모니터링하기 위한 포괄적 전략과 행동계획을 수립할 것
- (c) 당사국 영토 내 모든 환경의 법률 및 관행상의 “간접체벌”과 “훈육적체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
- (d)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 교내 비폭력 의사소통 및 갈등중재를 증진하고, 긍정적이며 비폭력적인 참여형 아동양육 형태를 촉진할 것; 폭력과 학대 신고를 장려할 것
- (e) 심리적 학대를 포함한 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을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하여 발견하고 적절히 대응하도록 관련 전문가를 양성할 것; 신고 지침을 수립할 것
- (f) 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고 적절히 대응하도록 보장할 것
- (g)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상담사, 임상심리사, 변호사의 수 증원, 아동 피해자들에게 무료 법률대리인 제공, 이주아동 및 장애아동의 학대피해아동쉼터 접근 보장 등을 포함하여 학대 예방, 피해아동의 회복 및 사회통합을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 개발을 보장할 것
- (h) 앞서 언급된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지역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인적, 재정적, 그리고 기술적 자원을 할당할 것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이행

28. 위원회는 아동에 대한 성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 성폭력 방지 및 근절을 위한 정책적 조치, 그리고 재범 감소를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 (a) 성폭력 및 학대가 여전히 만연해 있으며, 온라인 아동 성매매 및 그루밍과 교사에 의한 성희롱이 급증하였다는 점
- (b) 만 13세 이상인 아동은 동의능력 있다고 간주되어,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점
- (c)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했다고 고려되는 아동(“대상아동”)이 범죄자로 취급되며, 법적 조력 및 지원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고 구금과 같은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어 성적 착취를 당해도 신고를 단념하게 된다는 점
- (d)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성인 범죄자에게 보호관찰을 포함한 관대한 형이 내려진다는 점

29.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강력히 권고한다.

- (a) 온라인 성매매와 그루밍, 그리고 교사에 의한 성희롱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sexual exploitation) 및 학대를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b) 온라인 그루밍을 정의하고 형사범죄로 규정할 것
- (c)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할 것
- (d) 성매매 및 성적 학대에 연관된(“대상 아동”) 모든 아동, 다시 말해 만 18세 미만의 모든 개인을 법률상 “피해자”로 명시하고, “보호처분” 폐지, 지원서비스 및 법적 조력 제공, 보상과 구제를 포함한 사법절차 접근성 보장 등을 포함하여,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고 피해자로 처우할 것
- (e) 학교를 포함하여 인식 개선을 강화하고, 접근성이 높고 비밀이 보장되며 아동 친화적이고 효과적인 경로를 통한 성적 착취(sexual exploitation) 및 학대 신고를 독려할 것
- (f) 교사를 포함한 모든 성범죄자가 강요의 증거 유무와 상관없이 기소되고, 적절한 제재를 받도록 하며,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할 것

- **아동 권리 접근 (Child Rights Approach)과 친권의 재해석**

- 아동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인격체
- 권리주체자에 대한 의무이행자의 책무 이행 (부양의 대상 X, 부양의무자 O)
- 가정 ≠ 아동, 원가정 보호와 지원은 "아동"을 중심에 둔 아동 최상의 이익 관점에서
- 모든 아동의 참여와 의견청취권 보장을 위한 노력 = 아동 진술의 신빙성 확보를 위한 여정
- 가장 작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의 역할과 책무

- **진상조사특별법**

- 공공의 개입 이후에도 재학대와 사망이 발생한 사건을 아울러, 공적 보호체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
- 아동 관점에서 제도의 공백과 정책 현황이 검토될 수 있는 기회

- **친족성폭력과 조혼의 문제**

- 위원회는 이민자 공동체 내에서 아동의 결혼이 부모 동의만으로 승인될 수 있고, 그러한 이주 여아와 외국인 여아의 결혼사례가 보고된 것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예외 없이 조혼(child marriage)을 금지하고, 출신국과의 협력, 이민자와 난민을 위한 공적 등록 절차(civil registration procedures) 개설 등 이러한 관행을 예방하고 근절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CRC/C/KOR/CO/5-6, para. 30)

“ 내가 성폭력으로 잃은 것은 순결이 아니라 나의 아동기에 누려야 할 권리를 잃은 것이다.

김영서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

감사합니다.

친족성폭력에 맞서 광장을 여는 액션 워크숍
가부장제와 정상가족주의가 만든 ‘현장’

가.정.폭.력

김홍미리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성평등정책연구팀 연구위원 miri.hong@seoulwomen.or.kr

'가정폭력' 연구자에게 낯설고도/ 익숙한 친족성폭력

○ “친족성폭력 잘 몰라요. 가정폭력은 알아도”…?

1975년 강간 범죄 2,794건
1987년 강간 범죄 5,034건

반성폭력 운동
(1980년대 초중반)

80년대 미투/법제정운동 본격화
(1980년대 중후반-90년대초)

성폭력특별법제정
(1994)

가정폭력방지법제정
(1997)



「가정파괴」 初犯(초범)도 無期刑(무기형)

동아일보 | 1985. 11. 02 기사(뉴스)

「가정파괴」 初犯(초범)도 無期刑(무기형)
전담 檢事(검사)지정 被害者(피해자)명예 보호
金法務(김법무) 특별지시

金聖基(김성기)법무부장관은 2일앞으로 주거침입강도가 부녀자를 폭행하는 소위 「가정파괴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수사전담검사를 지정, 철저한 수사지휘로 범인을 반드시 검거토록하고 검거된가정파괴범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하라고 전국 검찰에 특별지시했다.

강도강간범의 경우 초범자라도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수 있으며 3년이내의 재범자, 3회이상의 강도전과가있는 누범자, 상습범에 대해서는 최고 사형에 처할수 있다.

金(김)장관은 또 가정파괴범에 의한 피해자들이 수치심과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범죄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수사과정에서 특히 피해자의 신분과 명예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같은 지시는 지난달 31일 가정파괴범 5명에 대한 사형집행으로 경종을 울린 데 이어 거듭 정부의 가정파괴사범에 대한 강력한 응징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東亞日報

發行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가 110호
 電話: 733-5221, 5231
 傳真: 733-6105, 6104
 廣告部: 733-6107, 6108
 配送部: 733-6105, 6106
 印刷部: 734-8806
 社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가 110호
 支社: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가 110호
 支社: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가 110호

새한여그림

1985. 11. 02. 동아일보, 가정파괴 초범도 무기형
 김성이 법무부장관은.. 가정파괴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수사전담검사를 지정...
 “가정파괴범죄 발생시... 초범이라 할지라도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하라고 전국 검찰에 특별 지시했다.”

반성폭력 운동, 그리고 분절적인 제도화

○ ‘성폭력에 아내구타가 포함되는가?’

- 1991년 9월 9일,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의 정당인 초청 간담회 <성폭력 범죄의 실태와 현행 문제점> → ‘성폭력에 아내구타가 포함되는가’

○ ‘성폭력(gender based violence)’인가 ‘성폭력(sexual violence)’인가?

- 성폭력 개념에 대한 논쟁은 성폭력특별법 제정이라는 구체적 목표가 있는 상태에서 일어남. → 법에 어디까지 포함할 (수 있을) 것인가
- 1992년 2월 12일 여성단체연합 내부워크숍에서 성폭력을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지 논의됨. → [결론] 논의 끝에 ‘아내구타’는 성폭력(sexual violence)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향후 여성운동에서 중요한 운동적 범주를 차지할 것이므로 법조항에 포함하기로 함.
- 5개월 후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는 추진위대표자회의를 개최해 성폭력특별법에 아내구타를 함께 다룰 수 없다며 기존의 결정 반복.

○ 성폭력특별법에서 제외된 가정내 성폭력과 가정폭력방지법제정운동의 시작

- 법 조항으로 연결되는 만큼 용어와 개념 정의가 명확한 것이 좋다는 많은 의견들에 의해, 협의의 성관계 중심의 성폭력(sexual violence)개념으로 성폭력특별법을 제정하고, 성폭력 개념에 대한 일반의 이해와 법체계의 현실적인 요구에 따라 가정폭력방지법을 따로 제정하기로 함(민경자, 1999:58).
- 신상숙(2007:225)은 성폭력의 의미가 좁아진 상황에서 재개된 입법의 상위범주가 아내구타에서 ‘가정폭력’으로 귀착되었다고 비판. 결과적으로 이러한 젠더 갈등의 ‘우회적’ 선택이 여성폭력과의 연결고리를 부각시키지 못했고, 여성인권이 아닌 ‘가족’프레임을 구축했다고 평가함

낮선/익숙함1

‘가족의 이름으로’

- ‘가족의 이름으로’ 구축되는 조밀한 폭력관계망
 - ‘가족이라서’ 말하기 어렵고,
 - 그것이 문제인지 알아채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며 (가족내 친밀성을 가장한/폭력)
 - 어렵게 말을 꺼낸다 하더라도 ‘가정 파괴범’이 되기 쉬운. (자기비난/죄책감/분노)
 - **폭력가정**을 지키기 위해 피해자의 **침묵과 인내를 종용하는** 부정의
- 그런데, 친족성폭력 피해 연령이 낮다는 점.
 - 아내폭력과 무엇이 다르며, 아내폭력과 어떻게 연루되는가
 - 관계적 자율성 관점에서 자기가치, 자기권위, 자기신뢰, 자기탈환 어떻게 가능할까?
 - (예) 폭력임을 인식하고 자기탈환의 여정에 진입하는데 있어서의 차이?
 - (예) 아내폭력에서 아내가 친족성폭력 당사자, 혹은 피해자녀의 ‘어머니’?
 - 취약한 위치의 가족구성원들은 서로를 어떻게 만나며, 어떻게 **다르게** 만나야 하는가?
 - 그러기 위해 나는/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표 7〉 피해 및 가해 시기

구분	피해 시기 빈도(%)	가해 시기 빈도(%)
학령전기(유아기)	17 (25.8)	0 (0.0)
학령기(초등학생)	36 (54.5)	3 (10.0)
청소년기(중·고등학생)	13 (19.7)	7 (23.3)
성인기 이후	0 (0.0)	20 (66.7)
전체	66 (100)	30 (100)

낮선익숙함2

‘정상가정’복귀 판타지를 넘지 못하는/넘지 않는

- 폭력 이후의 삶을 다루는 연구 부족 (결과이자 원인)
- ‘정상가정’ 복귀를 문제해결인양 호도함 (원인이자 결과)
→ 가족기능 회복이 목표이기 때문에 폭력 이후의 자립/자율성 논의는 소수.
- 가정내 폭력문제의 개별화(가정화) 와 오래된 반박 논쟁:
 - 가족갈등문제(젠더균형론) vs 젠더권력관계에 기반한 구조적문제(젠더불균형론)
- 친족성폭력 발생실태와 심각성이 꾸준히 보고되지만, 그 이상은 다루고 싶어하지 않는.
 - 암수율이 높고 피해연령이 낮고 범죄지속기간이 길다, 피해가 심각하다는 등.
 - 가족체계론적 입장에서의 접근이 주류 → 병리적 가족/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어머니
 - 여성주의 입장 → 젠더구조가 친족성폭력에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강조.
→ 가해자의 지배권력보다 어머니 역할(어머니 비난)에 초점을 두는 관점: 주양육자라는 고정
→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조건, 가정폭력(아내폭력), 문화적 조건은?(김경희, 2009)

강압적 통제망에 둘러싸인 '아내'의 자기탈환의 여정

강압적 통제망, 그리고 강압적 통제망을 무력화하는 아내들의 '관계적 자율성' 실천

★ 폭력관계를 벗어난 여성들의 삶의 여정에 관한 연구들은,

여성들이 **자신에 대한 감각을 변화시키고** 자신을 둘러싼 **조건과 환경을 재배치** 혹은 **재구성함으로써** 과거와는 다른 자기(self)를 생성하고 있음을 밝힘 (Mills, 1985; Farrell, 1996; Merritt-Gray & Wuest, 1995, 1999; Hou et al, 2013; McDonald & Dickerson, 2013) → 자기탈환, 자기실현, 자기발견, 자기재건, 자립 등

★ 여성들의 변화는

(1) 개인적인 과정일 뿐만 아니라 (2) 관계적이며, (3) 사회문화적인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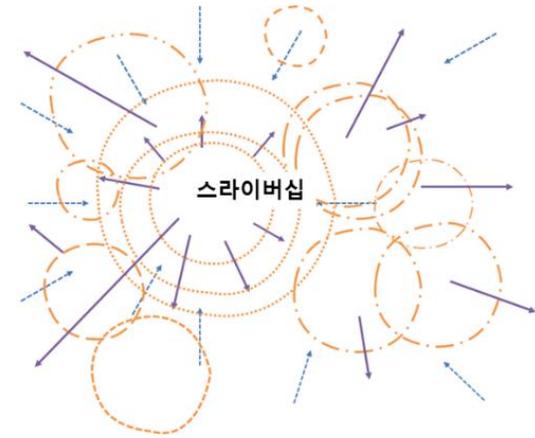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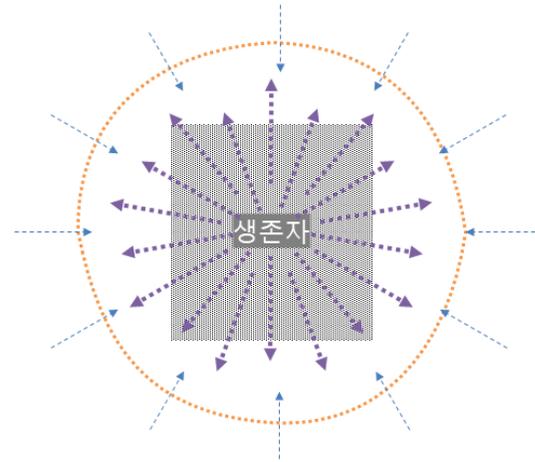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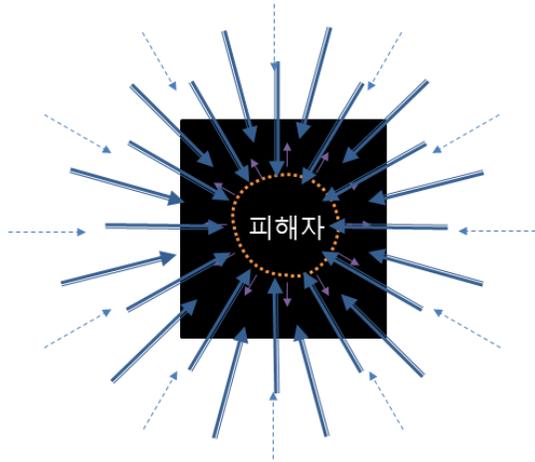
- 스스로 내린 폭력관계 종료결정을
- 공식적/비공식적 네트워크에 알리고

- 자신의 말하기에 응답 받으면서
- **'포기되지' 않는 한,**

- 주변자원을 사용하고 (재)배치 하면서
- 가해자의 폭력적인 관계규범을 문제삼고

- **새로운 수평적 관계규범을 생성하면서**
- **사회관계망의 변화를 이끈다는 것.**

관계적 자율성 실천과 스라이버십(thrivership)



-  탈출을 준비하는 힘
: 자기경계와 자기감각을 지키는 힘
-  차별적 젠더규범을
가족 내에서 집행하는
가해자의 규범권력
-  사회의 차별적 젠더규범
: 성역할규범, 정상가족규범
-  성차별적 가족구조

-  규범권력에 대항하는 힘
-  사회의 차별적 젠더규범
: 성역할규범, 정상가족규범
-  성차별적 가족구조

-  관계적 자율성의 감각(sense)으로 대안규
범을 만들어가는 힘
-  사회적관계망 속에서 생성하고
확장하는 자기(self)
-  사회적 관계들

*글/그림 출처: 홍미리, (2020),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자기탈환 여정을 통해 본
사회관계규범의 재구성과 관계적 자율성 실천에 관한 연구, p44.

자율성 역량과 자기신뢰(self-trust)

✓ Govier(1993)

- 자신의 선택과 신념을 평가하고 성찰적 판단에 기반한 결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자기에 대한 신뢰가 필수적이라는 의견.
- 사람으로부터의 비난이나 실망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나 확신을 잃고 자기불신을 내면화 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

✓ Mcrolyn & Sherwin(2000)

- 억압이 행위자의 자기신뢰를 방해하고 자율적 행동능력을 감소시킨다고 보며,
- 자율성을 연습하고 촉진함에 있어서 자기신뢰와 자기불신(self-trust and self-distrust)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
- 자율성 연습(exercising)은 행위자 자신의 신념과 가치, 욕망을 반영하며, 그것에 비추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 그러한 결정에 따라 행동하는 바, 행위자가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과 판단을 신뢰하는 것은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근간(underlie)이 되기 때문이다(Mcrolyn & Sherwin, 2000:262-263)

그렇다면, 자율적 행위자는 어떻게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하고

자신의 욕망, 가치, 신념, 의지를 반영한 자율성을 실천할 수 있는가?

자기에 대한 가치감각(sense of self-worth)의 대인관계 차원과 규범적 역량조건

Benson, 1994

- ✓ 자기신뢰의 상실과 수치심으로 인해 자유(free)가 감소된 사람은 스스로 존경받거나 명예롭다는 감각을 잃기 쉽고, 특정한 관계에 적용된다고 판단되는 규범적 기대(normative expectations)에 스스로 부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기 쉽지 않다고 분석
- ✓ 스스로 대인관계에 적용되는 다양한 규범적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
 - ★ →→ 때문에 자유로운 행위자에게 필요한 감각(a sense)은 규범적 요구에 대해 스스로 답할 능력이 있다고 여기는 것. 뿐만 아니라 그는 스스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고서는 자아에 대한 감각(a sense of one's selfhood)을 가질 수 없다고 보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감각이 있고, 그것이 드러나야 자신의 행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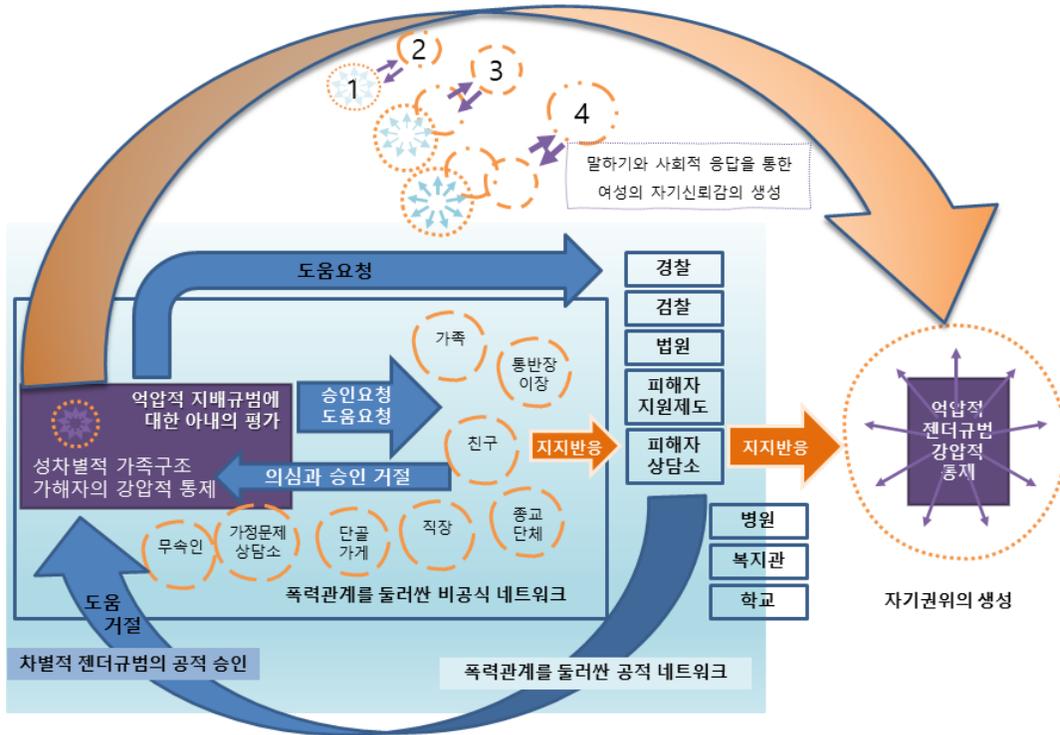
Benson이 제안하는 자율성의 요소

규범적 역량조건(a condition of normative-competence)

자유로운 행위자(free agency)의 핵심은

1. 주변화 된 위치에서 주류사회의 관점을 인식하고 자신에 대한 평가를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
2. 목소리와 자기권위(voice and authority)가 자율적인 행위자의 필수적인 요소..

★ 단. 행위자의 규범적 관점은 객관적인 도덕이성이 아니라, 행위자와 구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개인이나 기관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 때문에, 여성의 자율성을 촉진하려는 시도는 자신에게 억압적인 규범을 채택할 가능성을 수반한다고 보며, 그것의 대안은 의식고양과 같은 풀뿌리 활동을 통해 대안적인 규범을 개발하는 것.(Benson, 1990:57).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생성되는 자기 권위

억압받는 행위자들은

사회적 반응을 통해서 자기 신뢰/자기불신을 생산하게 된다는 것.

즉, 피해자가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고 감지하고

그러한 자신의 판단을 공식/비공식 네트워크에 전할 때,

돌아오는 응답들 속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판단에 신뢰를 심기도 하고,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거두기도 한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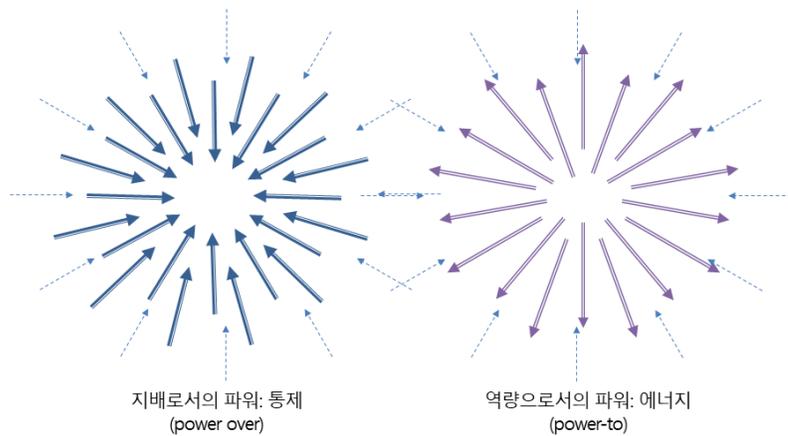
→ 폭력관계를 둘러싼 공식/비공식 네트워크는 그것 자체로 피해자 지지망으로 작동하지 않으며, 억압적인 젠더규범을 고수할 때 '강압적 통제망'으로 작동한다는 것.

*글/그림 출처: 홍미리, (2020),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자기탈환 여정을 통해 본 사회관계 규범의 재구성과 관계적 자율성 실천에 관한 연구, p40)

Benson의 제안은,

사회구조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행위자가 억압적인 규범을 '감당하는' 방식은 적응만이 아니라 **대안적인 규범의 생성을** 통한 다른 응대도 가능하다는 의미를 포함함.

대안적 규범의 생성과 <연대로서의 파워>



*French(1985)의 파워 논의를 이미지화 함.

✓ Allen(1998)

- 페미니스트 파워 논의가 지배와 역량 어느 한쪽을 강조하는 경향을 비판.
- 역량 또한 지배와 마찬가지로 파워의 특정한 응용(application)이기 때문에 저항만이 아니라 지배로도 설명될 수 있다는 것.
- 이러한 우려 속에서 그는 억압을 종식시키기 위해 개인이 행동할 수 있는 역량으로 **'연대로서의 파워(power with)'**를 제안하며, 그것을 '감각(sense)'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
- **연결감없이 생성된 파워가 지배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 동시에 **역량으로서의 파워 감각들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로 논의를 확장함.

친족성폭력과 어머니 ‘말하기’

‘... 사건의 전말과 일련의 재판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하는 분노와 당혹감을 느끼며 **퇴폐적인 성문화-병적인 아버지-무책임한 어머니-희생자인 아이** 라는 인식을 가지고 퇴폐적인 성문화의 퇴치와 성폭력특별법의 재정의 시급함을 역설하는 차원에서 이 ‘예외적인’ 사건을 이해하고 마무리 지었다’
(조주현,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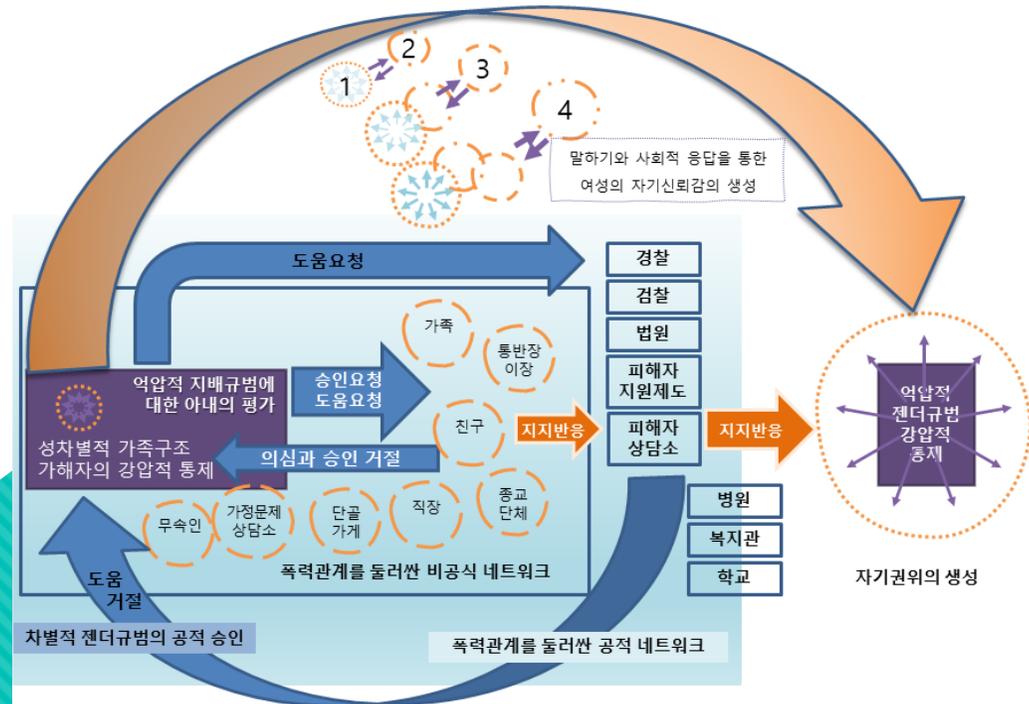


“말을 하고 나니까 방법도 찾아져요. 내가 이 말을 하니깐, 나 힘들어서 죽겠어 하나까 사람들이 책이라든가 뭐 계속 중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지 하고 그렇게 하게 되고.”(어머니B)

“저는 그부분을 푹푹...그리시아 인형처럼. 몇 까풀 벗겨야만 나오듯이...그 마주르카 인형인가요? 그렇게 딱 포장해서 벽장 안에 넣어놓은 심정이거든요. 절대 아무도 이걸 풀어보지 못하게끔...박스에서 딱 이걸 테이핑 해 갖고, 나조차도 풀어볼 수 없게끔 그렇게 해놓은 느낌밖에 안 들어요.”(어머니E)

*사례 출처: 김경희(2009), 어머니의 근친성학대 드러냄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p216.

“딸의 성학대 가해자가 오빠인 한 어머니는 근친성학대에 대한 초기 대처를 신중하게 잘했고 딸 또한 성학대를 부끄러운 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잘 치유하는 과정을 겪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 일을 친한 친구에게 알린 것이 학교 전체와 부모들에게로 확장되면서, 가족 모두는 주변의 소문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다. 어머니는 딸에게 이 일은 '무덤까지 갖고 가야 할 비밀' 이라고 다시 입막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다(김경희, 2009:216)



끝나지 않는 젠더균형론/불균형론 논쟁과 법제도적 조치를 중심으로 하는 가정폭력 논의들 속에서

월비(Walby, 2018)의 일갈.



“가정폭력에 대한 설명은 위험요인(risk factors)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변화의 이론’을 개발해야 하며,
이것은 ‘경제, 정책, 시민사회 및 다른 형태의 폭력들에 대한 변화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사회적 맥락에서의 변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Walby & Towers, 2018:12)

다음을 기억하며.

- ‘가정폭력/가정내 폭력/친족성폭력’ 을
 - 가정문제로만 인식하는 것은 문제이나
 - 아내폭력, 친족성폭력이 발생하는 ‘가정내(폭력)관계’ 의 문제라는 건 사실임.
 - 이것은 문제에 접근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함.
 - 핵심은, 아내폭력/친족성폭력이 발생하는 가족관계가 <지속된다>라는 점이며
 - 폭력을 지속시키는 (보장하는) 조건들을 페미니스트들은 ‘젠더구조’라고 불리움.
 - 지속이 아니라 중단을 위해 가족내 폭력에 어떻게 개입하고, 어떤 변화의 이론을 만들 것인가?
- [말할 수 있는 한, 폭력 이후의 삶을 전승하기를. 보여주고 들려주고 익숙하게 하기]
- 아내폭력과 친족성폭력의 교차접근
- 그러기 위해 나는/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각자의 숙제로.
다시 만날 때까지..



“광장행 버스를 타겠다”

2021.7.1.친족성폭력에 맞서 '광장'을 여는 액션워크숍
미류_인권운동사랑방

농담 같은 이야기

'키 작은 남성'을 위한
결혼정보회사의 배려



우리는 어떻게
광장으로 나갈 것인가

차별받는 사람들의 말하기
말하기가 시작될 때
다르게 말할 '우리'의 광장



차별 받는 집단은 말하기 어렵다

차별이나 폭력에 취약한 조건에 놓여있는 사람들일수록 말하기 어렵다.

사회는 이런 이야기일수록 들을 줄 모르게 된다.

사회는 문제제기를 수용하기보다 폭력과 차별이 '없음'을 확인시키려고 한다.

우리는 모두 ‘근본적으로 동등’한 존재

- ‘민식이법 놀이’ 때문에 어른들이 위험하다고?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 인권은 오직 대중들이 타인들을 근본적으로 동등하게 생각하도록 배울 때만이 번성할 수 있다. (린 헌트, <인권의 발명>)
- 배타적인 젠더 정체성은 자연적 차이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 유사성을 억압하는 것이다. (게일 루빈, <일탈>)
- 흑인이어서 노예가 아니라, 노예라서 흑인이다. (염운옥, <낙인찍힌 몸>)
- 차별의 구조는 우리가 모두 근본적으로 동등한 존재임을 잊게 만든다. 개인들을 특정한 집단으로 분류하며 부정적인 특징들을 부착하고 배제와 차별을 제도화한다.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불리한 대우 등이 쌓이면서 차별은 역사가 된다. 그리고 서로 다른 현실을 살게 된다.
-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이를 겪는다는 이해가능성이 오히려 이해불능을 낳는 역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리

-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교사한테 신체적 학대를 당했어요. 하지만 사과나 보상은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 어린이집 원장님이 ‘이제 다시는 ○○나라 사람 받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흑인은 다닐 수 없다고 했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처음부터 거절해주어서. 그런 어린이집을 다녔으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 “왜 아이를 특수학교에 보내지 않고 일반학교에 방치하지요?” “특수학교를 지원했는데 안 됐어요. ‘몸은 멀쩡하지 않느냐’고 하더군요. 교육지원청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 받으면 좋아질 거라고 했죠.”
- 장애아동 부모들은 특수학교 건립을 위해 무릎을 꿇고, 대구에 사는 무슬림들은 이슬람사원 건축을 위해 이웃 주민들에게 설명하러 다닌다. 권리는 있으나 권리를 주장할 자리가 없다.
- 차별의 구조에서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무슬림 같은 이름표를 붙인 후에만 보인다. 그리고 그 이름표들이 사람을 지운다.
- 목소리에는 꼬리표가 붙고 불신되거나 부인된다. 이들에게 허락된 유일한 자리는 ‘보호받는 자리’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쓰구이야마유리엔 장애인혐오살인사건은 무엇이었나.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이후 한국사회에서 여성은 어떤 자리에 있을까?

사회는 차별받는 ‘소수자’의 권리를 지키는 방식이 ‘보호’라고 여긴다. 여성이라서, 장애인이라서, 아동이라서 어쩔 수 없는 현실. 여성을 위해, 아동을 위해, 장애인을 위해 벌어지는 일들.

범죄 취약계층은 약하지 않다. 보호받는 것 외에 할 수 없게 만들어 취약해질 뿐이다.

차별의 구조에서 살아남을 방법은 조심하는 것, 그리고 능력을 키우는 것. ‘강해져서 바꿀 거야.’ 그러나 바꾸지 않고서는 강해질 수 없다.



차별 받는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할 때

“타인의 곤란함은 대체로 사소한 것이거나,
조금 심각하지만 스스로 불러온 것이거나,
어쩔 수 없었더라도 내게는 닥치지 않을 일이다.”

피해자의 말하기는 온 세계를 거꾸로 세워야 하는 일

소수자의 고통은 사회적으로 나타나기 어렵다. 소수자가 발언할 기회가 없다거나 상대적으로 억압되어왔기 때문만은 아니다. 소수자는 약하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피해를 말하는 것을 주저하기도 한다. (모로오카 야스코, <중요하는 입>)

보이지 않는 사람들, 들을 줄 모르는 사회. 피해사실을 통해서만 발언권이 인정되면서 피해사실의 입증에 권리의 전제가 된다. 개인의 의견, 감정, 제안이 아니라 ‘사실’이 주인공이 된다.

보호가 권리를 대체한 사회. 무결함의 입증.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존재였고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라고 한다.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거나 죽었을 때 가장 먼저 듣는 말)

권리를 지워버린 사회. (한 난민 인터뷰에 달린 댓글 “당신들은 지옥을 도망쳐 나온 것이지 천당으로 들어온 것으로 착각하시면 곤란합니다.”) 피해는 듣지만 권리는 듣지 않으며, 듣고 싶은 방식으로만 듣거나 불편함을 드러낸다.

피해자의 말하기는 세계를 다시 세우는 일

진실을 밝히는 것은 진실을 공유하는 세계를 만드는 것이다.

진실은 피해자의 말하기로부터 시작된다. 피해자가 언제나 맞는 말을 하기 때문이 아니다. 피해자는 가장 많은 질문을 던지고 가장 늦게까지 답을 구할 사람이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직접 나서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 그러나 진실과 정의, 치유와 회복은 피해자가 사건/세계의 중심에 설 때에만 가능하다.

회복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과 다르다.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갈 이유를 모르게 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만한 이유가 있음을 찾는 것”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되찾는 일.

‘사과’는 가해자가 가진 권한이 아니다. 가해자의 인정과 사과를 압도하는 사회적 인정의 흐름을 만들 때 가해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지는 방식 중 하나.

다르게 말하려면 외부세력이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는 약한 사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부당한 질문을 받는 사람이다. (정희진, <정희진처럼 읽기>)

탈시설을 요구하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은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가정이 아동에게 최상의 공간이 되려면, 가족 ‘바깥’이 필요하다.

당사자주의 또는 피해자중심주의의 양면성. ‘외부세력’은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 치부되고(당신이 당사자야?) 정작 당사자의 이야기는 지운다.(당사자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하는 자의 세계와 듣는 자의 세계가 양분된 채로는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질 수 없다.

자기결정권에는 외부세력이 필요하다. 자유는 의존할 수 있는 관계를 조직하는 역량. 스스로 지키는 것과 다른, 서로 지킬 수 있는 관계와 자원과 네트워크와 제도 등.



우리는 광장으로 간다

“요구하겠다, 듣든 말든
미치도록 하고 싶던 말을”

‘우리’가 된다는 것

- 차별은 흔히 어떤 ‘정체성’을 통해 설명되고 정체성은 대체로 ‘피해’를 통해 자각된다.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받아들이는 과정은 감수해야 할 ‘피해’가 더 많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기도 하므로 권리의 주체로 등장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이때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조직이 힘이 된다.
- 그러나 여기에서 오해가 생긴다. 사람들은 정체성이 같이 때문에 자동적으로 ‘같은 문제’를 겪고 ‘같은 요구’를 가지고 ‘같이 저항’하는 것처럼 여긴다. 그러나 고통이 응답을 얻는 과정이든 ‘문제’를 해석하고 ‘요구’를 도출하고 ‘저항’을 감행하는 과정이든 자동이 아니다. 노동조합도 마찬가지. 이해관계가 같을 때 동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동지가 되기로 할 때 이해관계를 맞춰가기 시작한다.
- 조직도 착시에 빠지기 쉽다. ‘같음’으로 채워질수록 조직이 강하다는 착시. 정체성이 보편성에 닿으려면 조직 안에서 서로의 차이가 더 많이 드러나야 한다. 서로 다른 이야기의 교차점을 확인할 때 보편성에 대한 감각을 얻게 된다.
- 낙태죄 폐지운동이 장애여성과 함께 할 때,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가 등장하게 됐다. ‘동료 되기’의 과정. 다양한 위치에서 구조적 폭력이 있음을 함께 발견할 때 각자의 위치를 옮겨 다니는 전략이 가능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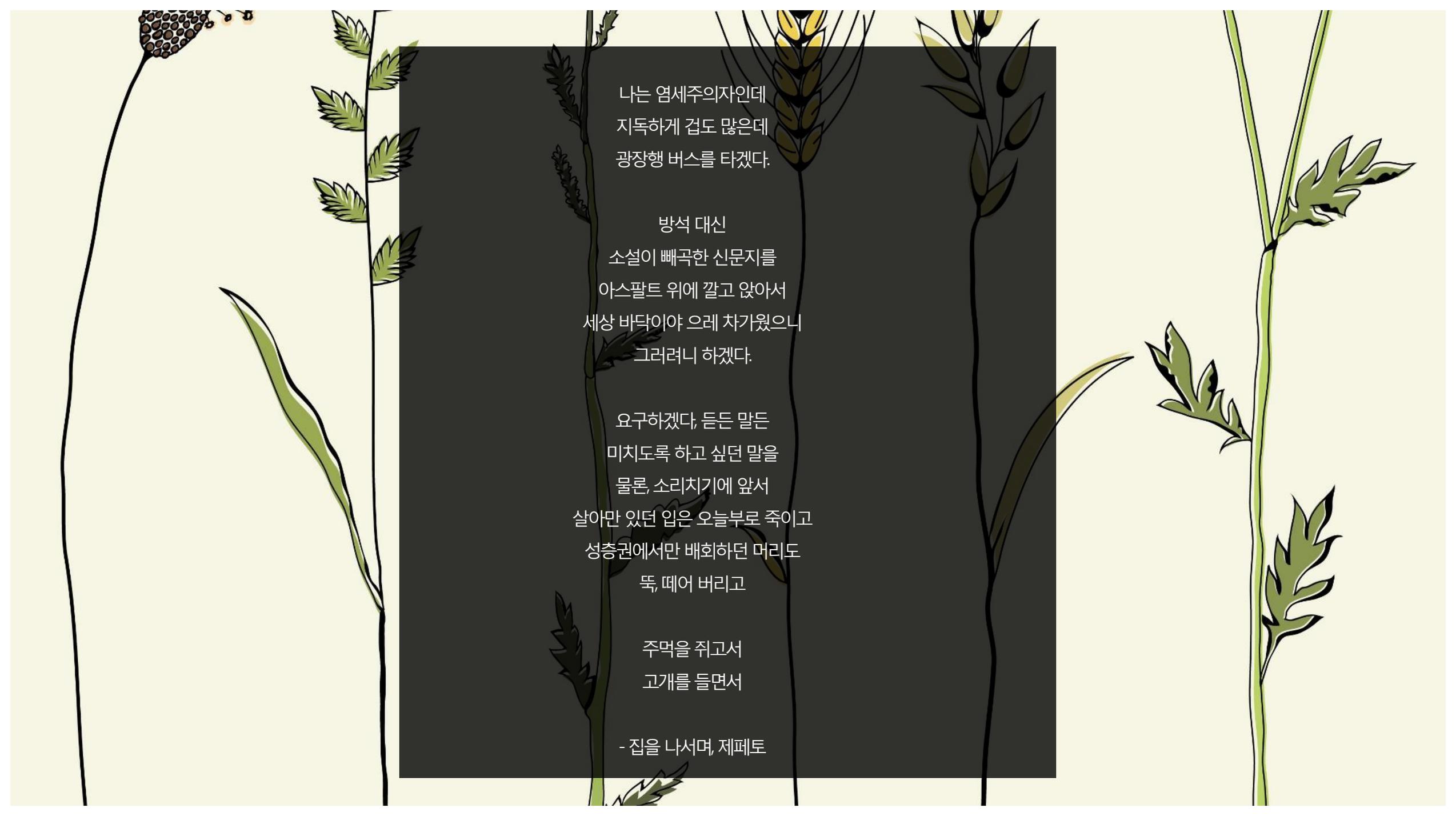
우리가 광장으로 가는 이유

한 발달장애 여성이 식당에 갔다가 비웃음을 당했다. 식당 직원이 자신을 가리키며 비웃던 상황을 단체 회원들에게 전하며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증거자예요.”

광장은 누군가의 말하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우리는 사례나 경험을 말하러 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증거자’인 세계의 부정의와 폭력을 알리려는 것이다.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하므로.

우리가 광장으로 가는 이유는 다르게 말할 동료들을 조직하기 위해서. 주어진 질문에 답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다시 만들 동료들. 권리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주어진 권리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집합행동을 통해 권리를 창출하는 것. (재난 피해자가 불운의 피해자가 아니라 안전할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으로 등장할 때 ‘재난 피해자의 권리’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피해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존엄을 선언한다. 피해자는 세계의 부정의에 대해 가장 먼저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다.



나는 염세주의자인데
지독하게 겁도 많은데
광장행 버스를 타겠다.

방석 대신
소설이 빼곡한 신문지를
아스팔트 위에 깔고 앉아서
세상 바닥이야 으레 차가웠으니
그러려니 하겠다.

요구하겠다, 듣든 말든
미치도록 하고 싶던 말을
물론, 소리치기에 앞서
살아만 있던 입은 오늘부로 죽이고
성충권에서만 배회하던 머리도
뚝, 떼어 버리고

주먹을 쥐고서
고개를 들면서

- 집을 나서며, 제페도

성폭력 피해 생존자를 위한

언론 대하기

언론 되기

김언경(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소장)

오매



“기존 단체 활동가 뿐 아니라
성폭력 피해 생존자 개인이나 그룹이
언론을 활용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언론을 대하는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언경



“정말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속마음 : 세상에 그런 게 있나?
고민해봐야겠다~)



제4조 (성폭력 피해자 보호)

- ① 언론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개정 2014.12.15.>
- ②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보도하거나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15., 2018.7.18.>
- ③ 언론은 수사 혹은 재판 중인 성폭력·성희롱 사건을 보도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7.18.>

[제목개정 2014.12.15.]

“이런 걸 알고 지켜야 할 사람들은 바로 언론인! 이잖아”

한국기자협회 창립선언문	한국기자협회 강령	한국기자협회 정관	한국기자협회 운영규정	언론윤리헌장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자살보도 윤리강령	자살보도 권고기준3.0	인권보도준칙	국가안보 위기시 군 취재·보도 기준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	재난보도준칙	감염병보도준칙	선거여론조사 보도준칙	혐오표현 반대 미디어 실천 선언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공감기준 및 실천요강	평화통일과 남북 화해 협력을 위한 보도 제작 준칙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성폭력을 보도하는 언론인이 지켜야 할 사안입니다.

그것을 언론인이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성폭력 생존피해자나 반성폭력 활동가의 탓은 없을까 자책하거나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때문이 아닙니다.

언론인들이 자신들의 책무를 지키지 않아서이죠.

언론인들이 게으르거나 무지하거나 바쁘거나 악의적이거나 등등의 이유로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의 책임을 찾아보고,

언론인이 지켜야 할 사안을 숙지하고,

언론인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 노하우를 터득할 이유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언론 대응의 방법 짚어보기

1) 보도자료, 기사, SNS 글쓰기

- 보도자료는 기자들이 쉽게 기사화할 수 있도록 ‘기사체’ 문장으로 만든 자료
- 보도자료, 기고, SNS 글쓰기, 청와대 국민청원을 하거나, 커뮤니티 글쓰기 등은 모두 기사화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쓰는 것이 좋아. 커뮤니티나 SNS 글쓰기에는 이 내용을 가지고 기사화 할 경우 추가취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아래 주의 문구를 쓰면 좋음.
- 보도자료는 기자들이 기사화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문서이기에, 최대한 보기 쉽게 사안의 개요를 정리할 필요 있음. 객관성을 확보 필요, 내가 이 사안에 대해 취재한 기자라고 생각하고 기사로 쓰는 것이 가장 좋음. 최대한 표준어, 맞춤법을 지키기, 미사여구 등 애매한 표현을 피하기, 객관적인 수치로 표현하기, 누군가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이나 비속어 등은 피하기

일반적인 언론 대응의 방법 짚어보기

2) 기자회견, 유튜브, 팟캐스트 발언

- 기자회견은 뉴스 가치가 높거나 사안이 중요할 때 기자들을 초청하여 회견문을 낭독하고 질의 응답시간을 가짐으로써 언론에 충분한 취재 기회를 제공하는 것
- 기자회견이든 방송이든 발언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설정한 뒤 이에 대해서 되도록 정제된 발언을 할 필요 있음. 되도록 가장 중요한 사항을 먼저 설명하고, 대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의 이야기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익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말하는 것이 좋음.
- 기사화를 원치 않는 사항이 있다면, 애초에 언급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음. 2차 가해 등이 예상되는 질문이나 이슈는 미리 기자회견 사회자나 방송 진행자에게 알려서 미리 정중하게 공지하는 것도 필요.
- 예상되는 질문이나 입장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기, 질문을 받았는데 발언하기 부적절하거나 잘 모르는 내용일 때는 “노코멘트”라고만 하지 말고, 답변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이해시키려 노력하는 것이 음.
- 추가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싶으면 추후 제공할겠다고 하기, 잘 모르는 것을 무리해서 말하지 않기. 카더라 성 말하지 않기. 과장하지 않기.

일반적인 언론 대응의 방법 짚어보기

3) 인터뷰, 출연

- 기자는 아무리 친한 기자라도 그가 나에게 뭔가를 물었을 때, 내가 한 답변이 기사화될 수 있음.
- 모르는 기자일 경우, 정확하게 어느 매체의 누구인지 확인하고, 어떤 내용의 기사를 쓰시는 것인지, 어떤 방향의 취재인지 묻고, 멘트를 따기 위한 것인지 단순히 나의 입장을 묻는 것인지 등을 물어보기. 어떤 사안을 알고 있느냐며 의견을 물어보는데, 그 사안을 정확히 모르면 일단 거절하고 검토 후 다시 전화를 하겠다고 하기.
- - 아는 사안이고, 통화를 시작했는데도 답변을 하고 싶지 않으면, 그때도 거절하기. 인터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고 자신이 없으면, 즉각적으로 답하지 말고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기;
- - 본인에게 묻는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명확하게 정정하기. 만약 상대방이 묻는 질문, 의혹제기가 매우 부당하고, 도저히 답변할 수 없는 것이라면, 보도되어서는 안 될 내용이라면 답변을 거부하고 보도된다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분명하게 말하기. 가정법 질문과 같은 유도 심문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기.
- 단독 인터뷰일 경우 질문지를 미리 달라고 하고 이에 따른 답변서를 잘 정리하기
- 인터뷰 이후에는 언제 보도되는지 물어보고, 되도록 기사가 나가기 전에 기사 본문을 보여주기를 요청해보기. 않기.

일반적인 언론 대응의 방법 짚어보기

4) 부당한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

- 인터뷰를 한 적이 없으면 해당 언론사에 직접 항의하기
- 인터뷰를 했다면 해당 기자에게 연락해서 항의하기
- 언론시민단체에 제보하기
- 언론의 문제점을 글로 써서 발표하기(시민기자 기고, SNS 등에 발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 민원 신청하기
-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기

엄청 많은 '성폭력 보도 가이드라인'

- 한국여성민우회가 2006년 만든 <성폭력보도 가이드라인>
-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2012년에 만든 <성폭력 범죄보도 세부 권고기준>
- 여성가족부와 한국기자협회,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이 함께 2014년에 만든 <성폭력 사건 보도수첩> 책자
- 여성가족부와 한국기자협회는 2018년에 다시 만든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공감기준>
- 여성가족부와, 한국기자협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가 2018년에 다시 만든 <성폭력, 성희롱 사건 이렇게 보도해주세요> 책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의3(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등) ① 방송은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로서 어린이·청소년이 아닌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방송은 성폭력·성희롱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취향, 직업, 주변의 평가 등 사적 정보를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방송은 성폭력·성희롱 사건을 선정적이고 자극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 되며, 가해자의 책임이 가볍게 인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방송은 성폭력·성희롱 사건 가해자(피고인, 피의자, 혐의자,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 확정된 자를 포함하며, 이하 '가해자'라 한다)의 비정상적인 말과 행동을 부각하여 공포심을 조장하고 혐오감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9. 23.]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기준



시정권고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07조제1항)

제4조 (성폭력 피해자 보호)

- ① 언론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개정 2014.12.15.>
- ②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보도하거나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15., 2018.7.18.>
- ③ 언론은 수사 혹은 재판 중인 성폭력·성희롱 사건을 보도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7.18.>

[제목개정 2014.12.15.]

1)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실천요강>(한국기자협회, 여성가족부 2018) 중 1. 취재시 주의사항

1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여야 한다.

. 이슈가 된 사건의 피해자라고 해서 사생활까지 국민의 알권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피해자나 가족, 주변인을 몰래 촬영해서는 안 되고, 피해자의 거주지나 직장 내·외부를 촬영하거나 촬영할 목적으로 사적 공간에 침입해서는 안 된다.

. 피해자의 사생활이 담긴 기록물(일기, 유서, 편지, 사진, 생활기록부)을 직접 촬영하거나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 취재를 위하여 피해자의 신상정보나 사생활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로 하여금 불법 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실천요강>(한국기자협회, 여성가족부 2018) 중 1. 취재시 주의사항

2 피해자 및 가족 등 관련자를 인터뷰할 때는 다음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 . 낯선 사람의 접근만으로도 일상적 심리의 평온이 깨지고, 불안함을 느끼는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
- . 사건 당사자나 가족은 인터뷰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취재를 요청하여 괴롭히지 말아야 하며, 사건당사자 등이 인터뷰를 거부하는 것을 보도에 부정적으로 언급하지 않아야 한다.
- . 자신의 소속과 신분을 먼저 밝히고, 사전 동의를 구하고 인터뷰를 실시하되, 보도를 전제로 하는 경우 보도이후 예상되는 2차 피해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다.
- . 사건의 본질과 관계없는 질문, 사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질문하지 않아야 한다.
- . 가해자의 변명을 그대로 전달하여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호기심 어린 질문 및 남성 중심적 통념에 근거한 질문은 삼간다.
- . 피해자에게 사건 발생의 책임을 떠넘기거나 입증책임을 지우는 질문을 삼간다.
- . 피해자나 주변인이 인터뷰인지 알지 못한 채 말하거나 답변하는 내용을 동의 없이 보도하지 않아야 한다.
- . 인터뷰 내용을 편집할 때에는 피해자의 진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 보호에 부적절한 내용이 그대로 보도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실천요강>(한국기자협회, 여성가족부 2018) 중 2. 기사 작성 및 보도 시 주의사항

1 피해자 등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피해자의 얼굴, 이름, 나이, 거주지, 학교, 직업, 용모 등을 직접 공개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법적 의무이다.

. 문제는 간접적인 노출! 신원노출을 막아주는 안전한 모자이크, 음성변조란 없다.

.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간접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피해사실을 공개하였다고 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부각시키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해의 제보자, 고소·고발인, 증인 등에 대해서도 신상 정보 및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정보를 동의 없이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실천요강> (한국기자협회, 여성가족부 2018) 중 2. 기사 작성 및 보도 시 주의사항

2. 피해자가 실명 및 얼굴을 공개하거나 직접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방식보다는 피해자를 보호하기에 적합한 보도방식을 고민하여야 한다.

. 실명이나 얼굴을 공개하는 보도방식은 2차 피해의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외의 방식은 신뢰성을 얻지 못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실명이나 얼굴을 공개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을 위축 시킬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신분과 얼굴을 공개하기보다 취재를 철저하게 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도록 한다.

. 언론은 피해자에게 실명이나 얼굴을 공개하는 보도방식을 종용해서는 아니 되며,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린 후 피해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실시한다.

. 생방송으로 피해자가 직접 피해사실을 전할 경우에는 피해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잘 전달되고 방송에 적합한 표현 및 묘사가 이루어지도록 사전에 질문 및 답변 내용을 점검하여 가십성 이슈로 소모되지 않도록 한다.

1)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실천요강> (한국기자협회, 여성가족부 2018) 중

2. 기사 작성 및 보도 시 주의사항

3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등의 사생활(피해자의 습관, 기호, 질병, 장래희망, 성적 이력, 주변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한 보도는 하지 않아야 한다.

. 이슈가 된 사건의 피해자 등이라고 해서 사생활 영역(피해자의 습관, 기호, 질병, 장래희망, 성적 이력, 주변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평가 등)까지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사건의 본질과 상관없는 영상, 사진 등을 본인 동의 없이 보도하는 것은 사건을 왜곡하고 피해자 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

1)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실천요강> (한국기자협회, 여성가족부 2018) 중

2. 기사 작성 및 보도 시 주의사항

4 피해자의 피해상태를 자세하게 보도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편견이 반영된 보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 등 피해 상태를 자세히 보도할 경우,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 될 소지가 높고, 일반인들에게도 성폭력·성희롱은 극복할 수 없는 피해라는 잘못된 통념을 심어 줄 수 있다. 또한 기사를 접하는 피해자에게 사건을 다시 상기하게 하고 공포심과 성적 굴욕감을 다시 경험하게 하는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

. 언론은 피해자가 SNS 등에 올린 피해상황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피해영상을 그대로 보도하기 보다는 보도하기에 적절한 묘사수위를 고려하고 표현을 정제하여 보도하여야 한다.

. 피해자를 중심으로 사건을 부르는 것은 피해자를 주목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2차 피해를 입힐 소지가 있으므로 피해자를 전면에 내세워 사건에 이름을 붙이는 등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을 보도 하지 말아야 한다.

. 피해자는 무기력하고 나약할 것이라는 편견은 피해자들이 피해를 빨리 치유하는데 악영향을 주며, 그렇지 않은 피해자가 오히려 피해사실을 의심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피해자는 성폭력·성희롱 사건의 대상으로서가 아닌 피해를 극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인격적 주체로서 배려 받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1)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실천요강> (한국기자협회, 여성가족부 2018) 중

2. 기사 작성 및 보도 시 주의사항

4 피해자의 피해상태를 자세하게 보도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편견이 반영된 보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 등 피해 상태를 자세히 보도할 경우,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 될 소지가 높고, 일반인들에게도 성폭력·성희롱은 극복할 수 없는 피해라는 잘못된 통념을 심어 줄 수 있다. 또한 기사를 접하는 피해자에게 사건을 다시 상기하게 하고 공포심과 성적 굴욕감을 다시 경험하게 하는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

. 언론은 피해자가 SNS 등에 올린 피해상황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피해영상을 그대로 보도하기 보다는 보도하기에 적절한 묘사수위를 고려하고 표현을 정제하여 보도하여야 한다.

. 피해자를 중심으로 사건을 부르는 것은 피해자를 주목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2차 피해를 입힐 소지가 있으므로 피해자를 전면에 내세워 사건에 이름을 붙이는 등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을 보도 하지 말아야 한다.

. 피해자는 무기력하고 나약할 것이라는 편견은 피해자들이 피해를 빨리 치유하는데 악영향을 주며, 그렇지 않은 피해자가 오히려 피해사실을 의심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피해자는 성폭력·성희롱 사건의 대상으로서가 아닌 피해를 극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인격적 주체로서 배려 받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1)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실천요강>(한국기자협회, 여성가족부 2018) 중

2. 기사 작성 및 보도 시 주의사항

5 성폭력·성희롱 사건에 ‘피해자 측(피해자 개인, 가정환경)에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보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강도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자에게 왜 가해자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는지, 왜 그 시각, 그 자리에 가해자와 같이 있었는지를 궁금해 하거나 따지지 않는다. 반면 유독 성폭력·성희롱 사건에 있어서는 왜 그 시각에 거기 있었는지, 피할 수는 없었는지에 대한 가치 판단이 담긴 보도를 한다. 이는 그 상황을 초래한 ‘피해자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잘못된 통념을 심어줄 수 있다.

.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직업, 평소 행동이나 성향, 결혼여부, 옷차림, 피해자 거주지와와의 접근 가능성 등 성폭력·성희롱 사건과 관계없는 비본질적인 내용에 관하여 언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의 보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모든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피해자에게 범죄 발생을 방지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가 방어에 취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 범죄의 ‘원인 제공’ 내지 ‘피해자의 책임’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 따라서 피해자의 상태를 보도함에 있어 은연중이라도 ‘가치판단’이 가미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어떤 상태 ‘때문에’ 범죄가 일어났다는 식의 표현은 삼가야 한다.

1)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실천요강> (한국기자협회, 여성가족부 2018) 중

2. 기사 작성 및 보도 시 주의사항

6 가해자의 가해행위를 자세히 또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사건의 심각성을 희석시키는 보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성폭력·성희롱 사건의 특성상, 가해자의 가해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자세히 묘사하게 되면 피해자를 그러한 자극적인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연상, 인식하도록 만들어 부정적인 이미지를 고착화시키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을 재경험하게 할 수 있다.

. 충격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범죄행위를 필요이상으로 묘사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가해자의 범행수법과 과정, 양태 및 수사기관의 수사기법을 자세히 설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해행위를 미화하거나 모호하게 표현(‘몹쓸 짓’, ‘나쁜 손’, ‘몰카’, ‘성추문’ 등) 하여 가해자의 책임이 가볍게 인식되게 하거나 가해행위의 심각성을 희석하는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영상 보도의 경우 성폭력·성희롱 사건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자극적인 자료화면을 넣거나, 범행 내용을 선정적으로 재연하여 영상화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아무리 범행 내용과 일치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대하는 장면의 재연이나 영상 보도는 삼가야 한다.

. 영상 보도에 사용되는 자료화면 구성의 경우 취재 기자 1인이 아니라 촬영 기자나 편집자 등 여러 사람이 관여하게 되므로, 선정적 영상 보도를 막기 위한 공동의 주의 및 협의가 필요하다.

1)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실천요강> (한국기자협회, 여성가족부 2018) 중

2. 기사 작성 및 보도 시 주의사항

- 7 가해자의 사이코패스 및 변태적 성향, 절제할 수 없는 성욕 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성폭력·성희롱 사건의 원인이나 범행 동기에 대하여 잘못된 통념을 심어주는 보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성폭력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성적 언동을 말한다. 그런데 언론에서 집중 부각하는 성폭력은 가해자가 무자비하게 피해자를 유린하는 내용이나, 가해자가 특별히 반사회성을 보이는 경우 등 특수하고 잔인한 사건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즉 잔인성, 무자비함을 보여야 성폭력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 . 가해자의 사이코패스 및 변태적 성향, 잔인성을 부각하는 보도는 성폭력 사건을 특수한 사람에 의해 예외적인 발생하는 사건으로 인식하게 한다. 이는 대부분의 성폭력 사건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아는 관계에서, 가해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혹은 권력을 이용하여 발생한다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평범한 가해자들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성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
 - . 가해자가 음란물, 술 또는 약물 등에 탐닉하였거나 성욕을 자제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보도함으로써 성폭력·성희롱의 원인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강화하거나 가해자의 책임이 가볍게 인식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실천요강> (한국기자협회, 여성가족부 2018) 중

2. 기사 작성 및 보도 시 주의사항

8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하고 신중한 보도를 하여야 한다.

- . 사실관계가 확인되기도 전에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진실인 것처럼 여과 없이 보도하거나 일 방의 입장을 두둔하지 않아야 한다.
- . 성폭력·성희롱 사건을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진실공방 프레임으로 다루는 것은 피해자에게 사실 확인을 압박하는 것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 사실관계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사건을 다룰 때에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미리 판단하는 내용을 보도하지 않는다.
- . 보도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실 확인을 거치도록 하며, 임의로 조작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 .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수사 및 재판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법률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여 관련 내용을 서술해야 한다.

1)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실천요강>(한국기자협회, 여성가족부 2018) 중

2. 기사 작성 및 보도 시 주의사항

9 성폭력·성희롱 사건 및 당사자에 대한 잘못된 사회통념이 재 확산되게 하거나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는 보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 성폭력·성희롱 사건을 가해자-피해자 간의 연애 및 성적인 관계, 또는 대립적인 구도로 보는 경향을 경계하여야 한다.
- . 성폭력·성희롱 사건 및 피해자에 대한 사회 통념을 확인하는 누리꾼의 반응이나 가해자 중심의 개인 의견, 사건을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이용하는 행태나 피해자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피해 사실을 폭로한다는 의혹제기 등을 여과 없이 단순 보도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 . 피해자의 피해사실 폭로 후의 부정적 변화를 피해자 또는 미투 운동 탓으로 돌리는 보도는 피해자 및 피해를 폭로하고자 하는 자를 위축시키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 . 피해사실 폭로 이후 가해자로 지목된 자의 재능 및 업적 등 긍정적 특성을 부각시키는 보도는 그 자체로 범죄 행위를 희석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1)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실천요강> (한국기자협회, 여성가족부 2018) 중 2. 기사 작성 및 보도 시 주의사항

10 성폭력·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하여 피해를 유발하는 조직문화 및 사회구조적인 문제, 피해자 보호 및 구제대책, 예방대책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보도한다.

- . 언론은 성폭력·성희롱 사건을 보도할 때 범죄자에 대한 분노와 복수 감정만을 조성해 처벌 일변도의 단기적 대책에 함몰되지 않도록 하며, 성폭력·성희롱 범죄를 유발하거나 피해를 확산시키는 조직 문화 및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주목하여 보도하여야 한다.
- . 언론은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률 정보 및 관련 제도에 대해 알리고, 성폭력·성희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사항도 적극 보도한다.
- . 사건 초기 뿐 아니라 성폭력·성희롱 피해 이후, 피해의 회복이나 치유 과정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 으로 보도하여야 한다.

2)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에서 제시하는 보도지침(장애여성공감 2016)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보도할 때 기존의 성폭력 사건의 보도지침과 더불어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지 않도록 다음의 사항들을 기억하면서 기사를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 장애여성을 무성적인 존재로 표현하지 않는다. 성적인 존재로서 존중받고 자신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 지나치게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로 표현하지 않는다. 장애로 인해 능력에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무능력함으로 그려지는 것은 옳지 않다.
-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서 비인격화하지 않는다. 가해자가 장애여성의 장애를 이용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짐승이나 악마로 표현하지 않는다. 이는 가해자가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 장애여성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통제하러 하지 않는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모두가 안전한 사회이지 장애여성만 보호라는 틀에 가두는 것이 아니다.

2)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에서 제시하는 보도지침(장애여성공감 2016)

- 범죄자가 장애인이 경우 장애만을 강조하거나 지나치게 일반화하지 않는다. 범죄행위의 원인을 오로지 개인의 장애에서만 찾다보면 그 개인을 둘러싼 사회구조의 문제를 보지 못하게 된다.
- 장애여성 피해자에 대해 극단적인 표현을 하지 않는다. 장애가 있는 피해여성이라는 이유로 비인격적인 존재로 대상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 장애와 관련된 용어를 사용할 때 정확하고 인권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장애유형에 따른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고, 장애를 병적인 것(장애를 앓는), 비정상적이고 것(정상인보다 지능이 낮은~), 일반적이지 않은 것(일반인에 비해~)이라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차별의 언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보도에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시각 이미지는 사용하지 않는다. 선정적인 이미지로 장애여성의 피해를 더욱 과장되게 표현 하는 것은 도리어 장애여성 성폭력의 일상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

1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여야 한다.

. 이슈가 된 사건의 피해자라고 해서 사생활까지 국민의 알권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피해자나 가족, 주변인을 몰래 촬영해서는 안 되고, 피해자의 거주지나 직장 내·외부를 촬영하거나 촬영할 목적으로 사적 공간에 침입해서는 안 된다.

. 피해자의 사생활이 담긴 기록물(일기, 유서, 편지, 사진, 생활기록부)을 직접 촬영하거나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 취재를 위하여 피해자의 신상정보나 사생활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로 하여금 불법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우리가 언론 되기
"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이라면, 잘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말도 하고 어떤 글도
써도 됩니다.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걸 하
세요!"

시민기자로, 칼럼으로, 유튜브나 팟캐스트로, 토론회,
워크숍, 토크쇼 등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세상에
목소리를 낼 필요 있음. SNS(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커뮤니티에 글쓰기, 또는
오마이뉴스에 시민기자로 기사를 송고하기, 브런치로
글쓰기, 유튜브 하기, 좋은 유튜브에 출연요청해서
발언하기 등등

“언론이 된다는 것은 언론인의 책임감도
똑같이 느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진실에 근거해야 하고, 타인의 인
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특히 어떤 경우라도 혐오표현이 담기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그것을 알린다”
공폐단단

광장으로 향하는 공폐단단 활동의 질문과 답

우리모두가 공폐단단

공폐단단이란 ?

- ◆ 평범해 보이는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친족 성폭력 문제를 고발하고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전면 **폐**지부터! 를 외치는 사람들 모임
그 명칭을 '**공폐단**'이라 한다면 의지를 단단히 하고자 '**단단**'을 덧붙임
- ◆ 자발적이며 비정기적으로 어떤 정해진 인원이 없이 이루어진,
1인 이상의 사회이자 연대하는 액션 모임
- ◆ 이에 행동하는 모든 1인을 "공폐단단 활동가" 라 칭한다
- ◆ 그동안 금기 시 되고 미투 행동의 사각지대였던 친족성폭력으로부터 모든 위력관계의 성폭력을 고발하는 반성폭력 액션 활동

공폐 단단 플래시몹 활동



2. 2019년 12월 21일(토)
1시 30분 부터 활동 액션



목동-여의도-국회의사당
앞에서 플래시 몹 액션
/지하철,쇼핑몰 피켓
활동

◆ 2019.12. 17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활동액션 예고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친부에 의한
피해자들의 고통만 부각시키고 피해자가
불운한 일을 겪은 것을 감정적으로 끔찍하게
표현 함

두려움과 편파적인 방송시각으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불행한 삶에 초점을 맞춤.
그러한 시각에 대해 거부행동을 취할 것 임을
예고

<그알> '부성애의 두 얼굴' 제작팀의 방법은
제작과정에서 친족성폭력에 대한 편견(가해자
악마화, 피해자의 고립)을 보여주면서
친족성폭력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몰라도
되게' 만드는 전형적 방식이라는 것을 밝힘

공폐단단 플래시몹 활동



사진 : 혜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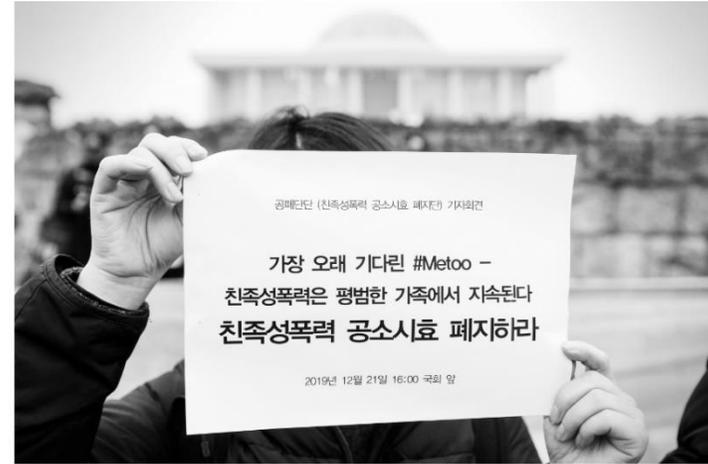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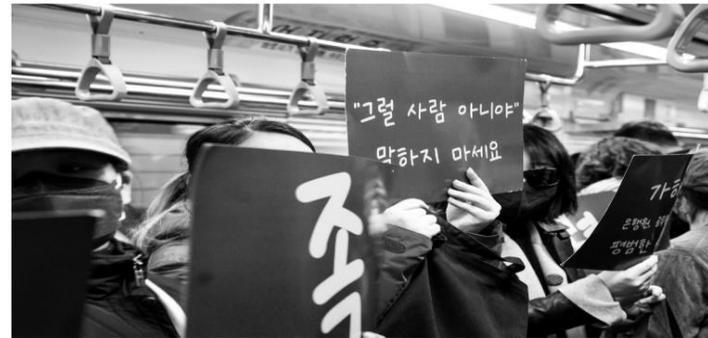


사진 : 혜영



공폐단단 국회앞 1인시위를 위한 연대 활동



2021.2. 22~26 국회 앞 1인 시위

-푸른나비의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공폐단단 활동액션

2월 마지막 주 5일 동안 국회 앞에서 정오 12시에 시작

전단지 배포 및 피켓 액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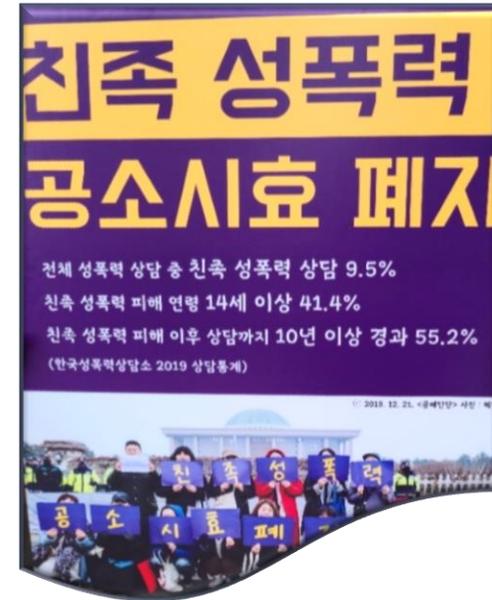
1시간 가량 생존자들과 공폐단단 활동가들이 연대하여 1인 시위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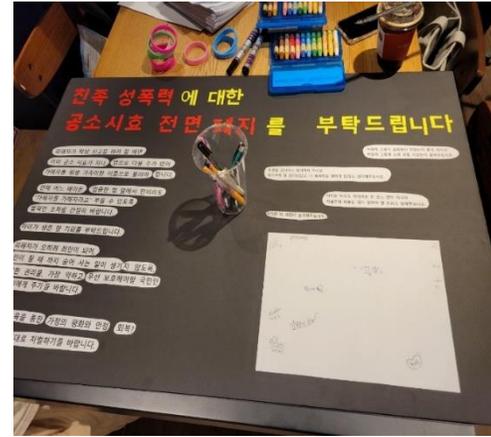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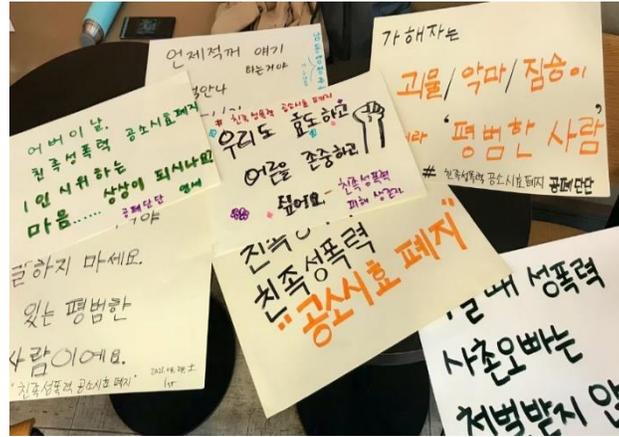
공폐단단 매.마.토 정기1인시위 연대활동

- ◆ 2021.4.24 광화문 앞 1인 시위
 - 민지의 공폐단단 활동액션 시작
 - 매월 마지막토요일 광화문 앞 12시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액션 시작”
 - ◆ 2021.5.8 광화문 앞 1인 시위
 - 영서의 어버이날기념 공폐단단 활동액션
 - ◆ 2021.5.29 광화문 앞 1인 시위
 - 명아의 매마토 공폐단단 활동액션
 - ◆ 2021.6.26 광화문 앞 1인 시위
 - 이파리의 매마토 공폐단단 활동액션
- 누구든 매월 마지막 토요일 1인 시위 진행자가 될 수 있음

보라보라
피켓



공폐단단 매.마.토 1인시위 액션



공폐 단단 친족성폭력 인식개선을 위한 연대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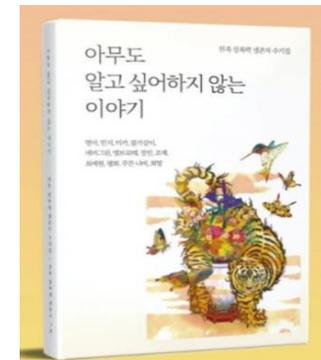


기사중 근친상간을
근친성폭력으로
정정요구 메일 액션



친족성폭력 생존자들
연대 인터뷰 진행

- ▶ 앞으로 몹쓸 짓 같이 성폭력 가해를 은유화 하는 용어를 지속적으로 정정 요구
- ▶ 아무도 알고 싶어하지 않는 이야기 저자로서의 활동
- ▶ 친족성폭력에 의한 범죄 고발에 대한 국민 청원에 대한 동의 및 공유하는 연대 활동
- ▶ 민지의 블로그/ 매마토 후기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minz5163&logNo=222350683823&proxyReferer=>
- ▶ 명아의 성피당당/ 매마토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dW0nIaLjkSg>



공폐단단 액션을 위한 질문과 고민

어떻게 알리는 것이 효과적인가 ?

아동 학대와 가정 폭력안에서 폭력의 끝인 성폭력인 친족성폭력을 어떻게 인권으로 연결할 것인가

왜 가해자의 범죄에 초점이 맞추어 지지 않는가? (예로 논문 중 친족성폭력에 대한 논문 약 35개중 가해자연구는 1-2개 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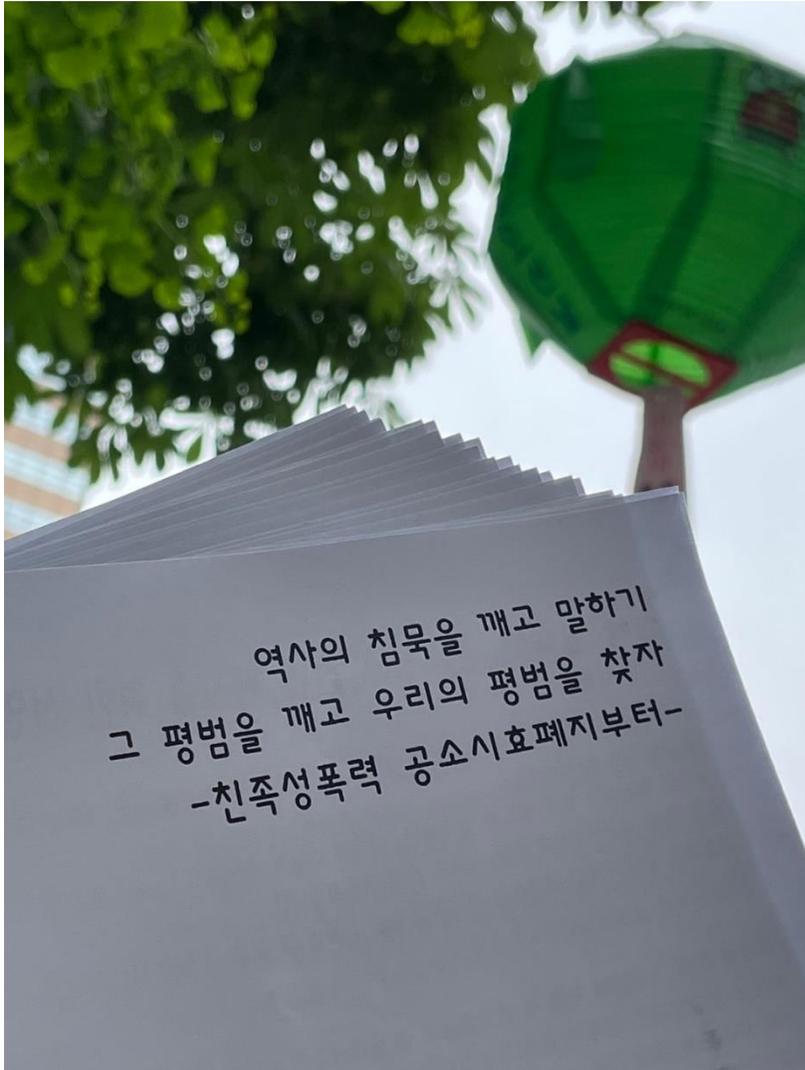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개인인 공폐단단 활동가로 자력으로 활동 할 때 소진되지 않고 연대하는 것은?

피해자 지원은 절대부족(최대500만원상당지원) 전국 4개소 쉼터 및 자조모임은 한국성폭력 상담소 1개

각자의 트라우마가 있는 생존자들이 연대 할 수 있는 방법은?

피해자가 알아서 극복하고 성장을 하길 바라는 사회인식을 어떻게 깰 것인가?

각 개인이 자신도 모르게 인식하고 있는 가부장제가 무엇인지 알게 하려면?



역사의 침묵을 깨고 말하기
그 평범을 깨고 우리의 평범을 찾자
-친족성폭력 공소시효폐지부터-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이다
말하는 우리가 권력이다
개인의 역사는 자신이 쓴다



공폐단단 친족성폭력 인식개선을 위한 연대활동
참여자로서의 고민과 탐구

공폐단단 명아

안녕하세요. 친족성폭력 생존자로서 매마토 정기 1인 시위와 친족생존자 연대 인터뷰에 참여하고 있는 명아입니다.

공폐단단의 활동에 함께 하면서 참여자의 한사람으로서 느낀 고민을 나누려고 합니다.

1인 시위지만 여러 명이 하고있어서 법률로 제지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항상 하게 됩니다.

시위를 하면서, 시위 내용에 관심을 가지거나 질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서명을 받는 등의 액션이 동반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서명을 받게 되면 어느 기관에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이 있습니다.

생존자들의 자발적 시위운동이라는 의미도 좋지만,

그 사실을 광문에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어졌습니다.

친족성폭력 공소시효에 관한 기사를 보도했던 기자들에게 1인시위를 알리는 메일을 보냈는데요.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지만, 절반은 메일을 읽지않았습니다. 그 외의 방법을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친족성폭력 생존자 연대 인터뷰에 참여하면서 느낌 점도 있는데요,
인터뷰를 혼자서 하기보다 함께 연대해서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생존자로서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의미로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각자 다른 경험을 가진 생존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더 잘 반영하기 위해서 이고
생존자가 다른 생존자와 생존자의 말하기를 지켜준다는 느낌으로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족성폭력 문제는 나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연대의 의미가 큼니다.
함께 연대하여 인터뷰를 하면서 공감하고 지지하는 생존자들의 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뷰에서 느낀 고민들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싶은데요.

성인지감수성 데스크가 설치된 언론사도 일부 있습니다. 이러한 데스크 설치의 확대를 위해서, 생존자들이 언론사가 가부장적 태도를 벗어날 수 있도록 요구를 해나가기를 바라는 다른 생존자의 의견을 전달합니다.

이전에 근친상간이라는 단어를 수정하도록 이끌어냈듯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기자협회에 성폭력 보도에 대한 가이드가 있음에도

사전에 인터뷰에 대한 정보를 주지않고 통념적인 '피해자다움'을 강조해서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피해자가 힘들어하는 모습만을 원하는 방식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 저도 생존자가 언론과 인터뷰할 시에 요구할 것과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인터뷰시 생존자에게 중요하다고 느낀 것은 세가지 정도입니다.



첫번째, 사전에 기획의도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미리 요청하고, 기자와 언론사의 성향을 파악하여 인터뷰 당사자가 동의나 거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

두번째, 보도하기 전에 생존자가 먼저 확인하여 삭제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세번째, 적합한 인터뷰료를 요청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요구입니다.

이후에 또다른 생존자가 인터뷰를 하게 될 때, 생존자를 존중하고 잘못된 통념으로 보도하지 않도록 현재 인터뷰를 하는 생존자들이 변화를 이끌어낼 지점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생존자가 보도되길 원하는 내용과 방향을 제시해 직접 언론사에 요청하는 방법도 시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명의 참여자로서 고민되었던 부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생존자 스스로가 연대하여 함께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힘을 가졌는지 활동하는 그 얼굴들이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는지 경험했습니다. 앞으로도 친족성폭력 생존자 스스로의 힘으로 연대하는 사회 활동이 지속되고 널리 퍼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친족성폭력에 맞서
'광장'을 여는
액션 워크숍



참여자 질의응답과 토론